

2016년도

---

수입증대 · 예산절감 우수사례집



경 기 도



2016년도

---

수입증대 · 예산절감 우수사례집



경 기 도



# 목 차

# Contents

## I 수입증대 사례

- ◇ [경기도] 2015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증대 ..... 1
- ◇ [경기도] 명품가방·시계 등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 5
- ◇ [경기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증과세율 개정 ..... 11
- ◇ [수원시] 현미경렌즈식의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 25
- ◇ [수원시]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판매 수익금 ..... 28
- ◇ [고양시] 압류출자증권 공매를 통한 세입증대 ..... 32
- ◇ [성남시] 국고수입금 시 수입 전환 ..... 34
- ◇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을 통한 수입증대 ..... 37
- ◇ [광주시]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 38
- ◇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마련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확보 ..... 43
- ◇ [부천시] 창업벤처기업 조세감면제도 악용업체 세금의 환수 ..... 45
- ◇ [군포시] 문화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수입증대 ..... 46
- ◇ [오산시] GPS기반 영치시스템 운영으로 체납·대포차량 근절 ..... 48
- ◇ [오산시]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및 SMS를 통한 체납액 징수 ..... 52
- ◇ [구리시] 세무조사 기법 활용을 통한 고액의 취득세 발굴 추징 ..... 56
- ◇ [연천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채권자대위등기를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58

## II 예산절감 사례

- ◇ [경기도] 미납 통행료 납부 안내문 송달방법 개선 예산절감 ..... 61
- ◇ [수원시] 대로구간 파쇄포장 합리적 대가기준 마련 ..... 63
- ◇ [수원시] 수원시 인터넷 서비스 망 통합 ..... 65
- ◇ [수원시] 세류동 중1-35호, 중1-149호선 도로개설 ..... 67

# 목 차

# Contents

- ◇ [고양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비 절감 ..... 69
- ◇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78
- ◇ [안산시] 공시지가현황도 시스템 자체 개발 ..... 81
- ◇ [안산시] 상록구청사 에너지 절감 ..... 82
- ◇ [남양주시] 노면청소차 운영 방식 개선으로 예산 절감 ..... 83
- ◇ [안양시] 안양2동 양명교주변 도로확장공사 공법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 ..... 84
- ◇ [안양시]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 ..... 87
- ◇ [평택시] 평택에코센터 조성 설계VE 및 민투사업 직접 수행으로 예산절감 ..... 91
- ◇ [의정부시] 장기 미집행 시설 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자본 유치를 통한 예산 절감 ..... 93
- ◇ [시흥시] 연구용역 직접수행으로 용역비 예산절감 ..... 94
- ◇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오수관로) 설치공사 예산절감 ..... 95
- ◇ [양주시]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 98
- ◇ [안성시] 국가정책 부합 하수요금 조정으로 재정절감 ..... 102
- ◇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약품사용량 절감 ..... 108
- ◇ [포천시] 경기도체전 화단조성용 초화류 보급 ..... 114
- ◇ [양평군]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복지대책) ..... 117
- ◇ [양평군] 주민의 나눔참여로 행복한 “해피나눔 1인 1계좌 기획사업” ..... 120
- ◇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 프로그램 자체개발 ..... 124
- ◇ [경기연구원]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통한 ‘17년 예산 절감편성 ..... 126
- ◇ [화성도시공사] 발파암 매각을 통한 사업비 절감 ..... 128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1. 수입중대 사례





# 1

## 특별교부세 확보 증대

기관명 : 경기도 예산담당관

담당자 : 박종수(031-8008-2117)

### < 성과요약 >

- '15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적극 발굴 및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방문 설명·설득을 통하여 전년대비('14년) 34억원 증가한 169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증가하는 재정수요 대비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난예방사업 예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어려워짐
- '1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은 42억원에 불과(8월말까지 60억원)하여 대책 마련 필요

### □ 개선내용

-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교부사례 등 적극 홍보 및 신청 독려  
⇒ 하반기 신청 건수 19건, 1,063억원(상반기 1건, 30억원)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 수시방문 및 설명

### □ 개선효과

- **‘15년 특별교부세 확보 증대(하반기 29건, 127억원 확보)**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년도 | 2014년도 | 증감액 | 증가율   | 비 고 |
|-------|--------|--------|-----|-------|-----|
| 특별교부세 | 169    | 135    | 34  | 25.2% |     |

※ '15년도 전국 시도(본청) 평균 확보액 158억원 대비 11억원 초과 확보

▶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000천원(기여자 박종수 외 5명)

## 참고

## 특별교부세 현황

① 경기도 특별교부세 확보액 : 169억원(전년대비 34억↑)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년도 | 2014년도 | 증감액 | 증가율   | 비 고 |
|-------|--------|--------|-----|-------|-----|
| 특별교부세 | 169    | 135    | 34  | 25.2% |     |

※ '15년도 전국 시도(본청) 평균확보액 158억원 대비 11억원 초과 확보

② 월별 신청 및 교부내역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상반기  |       |     |    |    |    |    |    | 하반기 |       |    |    |     |     |     |     |
|------|------|-------|-----|----|----|----|----|----|-----|-------|----|----|-----|-----|-----|-----|
|      | 계    | 소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소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4 | 신청건수 | 10    | 6   | 1  | 1  | -  | 2  | 2  | -   | 4     | -  | -  | -   | -   | 4   | -   |
|      | 신청금액 | 513   | 208 | 10 | 36 | -  | 97 | 65 | -   | 305   | -  | -  | -   | -   | 305 |     |
|      | 교부건수 | 11    | 7   | 1  | 1  | -  | 2  | -  | 3   | 4     | -  | -  | -   | 1   | 3   | -   |
|      | 교부금액 | 135   | 86  | 5  | 7  | -  | 20 | -  | 54  | 49    | -  | -  | -   | 30  | 19  | -   |
| 2015 | 신청건수 | 20    | 1   | 1  | -  | -  | -  | -  | -   | 19    | -  | -  | -   | 1   | 8   | 10  |
|      | 신청금액 | 1,093 | 30  | 30 | -  | -  | -  | -  | -   | 1,063 | -  | -  | -   | 30  | 698 | 335 |
|      | 교부건수 | 35    | 6   | 1  | -  | 1  | -  | -  | 4   | 29    | 18 | 1  | -   | -   | 3   | 7   |
|      | 교부금액 | 169   | 42  | 6  | -  | 9  | -  | -  | 27  | 127   | 14 | 4  | -   | -   | 47  | 62  |

③ 분야별 교부내역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2014년             |    |     | 2015년                     |    |     |
|------|-------------------|----|-----|---------------------------|----|-----|
|      | 내 용               | 건수 | 금 액 | 내 용                       | 건수 | 금 액 |
| 계    |                   | 11 | 135 |                           | 35 | 169 |
| 재난안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 2  | 12  | 구제역 방역대책                  | 2  | 15  |
|      |                   |    |     | 메르스 긴급대책                  | 2  | 10  |
|      | 세월호 침몰 수습지원       | 2  | 20  | 가뭄대책                      | 4  | 35  |
|      |                   |    |     | 급경사 붕괴위험 지역정비             | 17 | 14  |
|      | 소방장비 확충           | 1  | 39  |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노인 보호구역 개선 등 | 4  | 50  |
| 지역현안 | 여주·가남 도로확포장 공사 등  | 3  | 45  | 시흥등기소 ~ 하상동간 도로확장         | 1  | 30  |
| 시책수요 | 조기집행, 합동평가 등 인센티브 | 3  | 19  | 조기집행, 합동평가 등 인센티브         | 5  | 15  |

④ 전국 시도별(본청) 교부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2014년      | 2015년      |           |           |            | 비 고                    |
|------------|------------|------------|-----------|-----------|------------|------------------------|
|            |            | 소계         | 지역<br>현안  | 시 책       | 재 해<br>대책  |                        |
| 계          | 4,085      | 2,686      | 956       | 367       | 1,363      |                        |
| 서 울        | 35         | 19         | -         | 14        | 5          |                        |
| 부 산        | 1,268      | 158        | 90        | 34        | 34         |                        |
| 대 구        | 170        | 138        | 72        | 24        | 42         |                        |
| 인 천        | 242        | 204        | 67        | 39        | 98         |                        |
| 광 주        | 132        | 133        | 71        | 30        | 32         |                        |
| 대 전        | 118        | 110        | 55        | 14        | 41         | 2015년 :<br>지역현안+시책 69억 |
| 울 산        | 106        | 120        | 55        | 32        | 33         |                        |
| 세 종        | 70         | 90         | 30        | 16        | 44         |                        |
| <b>경 기</b> | <b>135</b> | <b>169</b> | <b>30</b> | <b>15</b> | <b>124</b> |                        |
| 강 원        | 223        | 200        | 66        | 16        | 118        | 2015년 :<br>지역현안+시책 82억 |
| 충 북        | 207        | 158        | 75        | 17        | 66         |                        |
| 충 남        | 166        | 296        | 42        | 49        | 205        |                        |
| 전 북        | 198        | 223        | 61        | 12        | 150        |                        |
| 전 남        | 257        | 144        | 57        | 11        | 76         |                        |
| 경 북        | 255        | 241        | 87        | 16        | 138        |                        |
| 경 남        | 353        | 167        | 68        | 17        | 82         |                        |
| 제 주        | 150        | 116        | 30        | 11        | 75         |                        |

※ '15년도 전국 시도(본청) 평균확보액 158억원 대비 11억원 초과 확보

⑤ '15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단체별      | 교부일자       | 사업명                           | 금액     |
|----------|------------|-------------------------------|--------|
| 경기<br>본청 | 35건        | 소계                            | 16,876 |
|          | 2015-01-16 | 구제역 방역대책비                     | 600    |
|          | 2015-03-31 | 구제역 AI 방역대책비                  | 910    |
|          | 2015-06-08 |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            | 500    |
|          | 2015-06-18 | 메르스 1: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          | 500    |
|          | 2015-06-22 |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대책비                | 1,200  |
|          | 2015-07-29 | 가뭄 극복 긴급대책비                   | 500    |
|          | 2015-07-29 |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 50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이화2)            | 141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삼회4)            | 129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삼회5)            | 123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삼회1)            | 75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효명11)           | 117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고성2)            | 93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고성3)            | 131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삼회6)            | 27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효명9)            | 52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효명8)            | 36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이화3)            | 39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도평14)           | 108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도평13)           | 96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도평4)            | 45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도평5)            | 21     |
|          | 2015-07-29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도평2)            | 24     |
|          | 2015-08-05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이화1)            | 144    |
|          | 2015-11-12 | 폭염대책 홍보비(무더위쉼터 운영 안내표지판 등 설치) | 344    |
|          | 2015-11-12 | 시흥 등기소-하상동간 도로 확장             | 3,000  |
|          | 2015-11-12 |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 사업                | 150    |
|          | 2015-12-14 | 가뭄대책비                         | 1,500  |
|          | 2015-12-14 |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 1,650  |
|          | 2015-12-14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1,020  |
|          | 2015-12-21 |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 300    |
|          | 2015-12-28 |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 120    |
|          | 2015-12-30 | 대화송포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 2,000  |
|          | 2015-12-30 |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 135    |
|          | 2015-12-30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 996    |

기관명 : 경기도 세원관리과

담당자 : 최수현(031-8008-3547)

## &lt; 성과요약 &gt;

-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압류 확보한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전국최초 동산공매를 통하여 386백만원 체납액을 징수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경기도의 공평과세 의지 대국민 홍보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동산공매 절차에 대한 매뉴얼 부재
  - 부동산과 달리 동산에 대하여는 공매 실무 매뉴얼 부재
  - 이로 인하여 그간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까지만 진행하고 체납처분의 완성단계인 공매는 시행하지 못함

## □ 개선내용

- 동산공매 실무 매뉴얼 구축
  -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기초로 실무 매뉴얼 구축 및 시·군 담당자 교육
- 동산공매 추진계획에 따른 도 시·군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주요 실시 사례 1】

|      |   |
|------|---|
| 체납자  | 안○○ (지방세 3,600만원 체납)  |
| 현황   | 1. 체납자는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으로 체납세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주장<br>2. 본인 및 가족 모두 사업장에 위장전입 되어 있어 실 거주 주소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 |
| 활동내역 | 1. 사업장 내부 수색을 통하여 버려진 카드명세서의 청구지 주소 확보<br>2. 해당 주소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실거주 확인 (68평형 고급아파트)               |

|    |   |
|----|---|
| 결과 | 실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하여 명품 가방 시계등 69점 압류완료<br>※ 압류 완료 후 3회 걸쳐 체납세금 자진 납부함 |
|----|---|



### 【주요 실시 사례 2】

|      |   |
|------|---|
| 체납자  | 홍○○ (지방세 4,200만원 체납)  |
| 현황   | 체납자는 2009년부터 한번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 활동내역 |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고지서, 독촉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납부의사없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 체납자로 판단 |
| 결과   | 자택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하여 현금(1,265만원), 다이아몬드 등 8점 압류                 |



### 【주요 실시 사례 3】

|      |   |
|------|---|
| 체납자  | 이○○ (지방세 2,900만원 체납)  |
| 현황   | 경기 불황으로 체납세금 납부여력 없으며,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도 지인의 도움으로 무상 거주 중이라고 주장(55평 고급아파트)   |
| 활동내역 | 1. 조사결과 거주중인 <b>55평 아파트의 소유주</b> 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명으로 되어 있음을 파악함<br>2. 고액의 체납자 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총 106회에 걸쳐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음을 파악함 |
| 결과   | 자택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하여 <b>롤렉스시계, 귀금속 등 13점 압류</b><br>※ 다음날 체납세금 전액 자진납부함  |



### 【주요 실시 사례 4】

|      |   |
|------|---|
| 체납자  | 방○○ (지방세 2,800만원 체납)  |
| 현황   | 명의를 빌려줘서 발생한 체납세금이며, 현재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살고 있어 납부할수 없다고 주장  |
| 활동내역 | 1. 조사결과 체납자는 전 동대문모피협회 회장 이었으며 현재 배우자 명의로 동대문에 대형 원단가게 운영중임이 확인됨<br>2. 배우자 명의의 고급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 체납자로 파악됨 |
| 결과   | 자택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하여 <b>명품가방, 명품시계, 순금열쇠 등 62점 압류</b>   |



- 전국 최초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등 체납자 동산공매
  - 일 시 : 2015. 10. 7(수) 13:30 ~ 17:00
  - 장 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 방 법 : 물건별 개별입찰
  - 공매물건 : 227건(감정평가액 7,022만원, 체납액 218,585만원)

| 계   | 명품가방, 지갑 | 명품시계 | 귀금속 | 기타 |
|-----|----------|------|-----|----|
| 227 | 47       | 17   | 144 | 19 |

※ 공매물건 브랜드

- 가방, 지갑(47) 루이비통(16), 샤넬(4), 구찌(4), 프라다(3), 펜디(2), 발렌시아가(1), 에르메스(1), 기타(16)
- 시계(17) 구찌(3), 불가리(2), 몽블랑(2), 쇼파드(1), 기타(9)
- 귀금속(144) 반지(75), 목걸이(36), 귀걸이(16), 행운의 손금열쇠(3), 기타(14)
- 기타(19) 카메라(13), 색소폰(2), 플루트(2), 기타(2)

□ 추진 결과

- 공매물품 227건 중 173건 낙찰
- **386백만원 체납세금 징수**
  - 공매장 입장인원 약 1,200명
  - 입찰서 약 1,100건 접수
  - 90여개 언론사에서 보도

▶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000천원(기여자 최수현 외 6명)

# 참고1

# 언론 보도내역

| 구 분        | 언론사(90)                | 보 도 내 용                            |
|------------|------------------------|------------------------------------|
| 방송<br>(5)  | KBS뉴스                  | “고가 가방·시계도 압류”...악성 체납 끝까지 환수      |
|            | SBS뉴스                  | 체납자 압류 명품 사려고...1천 명 몰렸다 '복새통'     |
|            | TV조선                   | 수백만원 핸드백과 시계까지, 체납자 명품 공매 '복새통'    |
|            | YTN뉴스                  | 체납자 압류 명품 공매 '복새통'                 |
|            | 연합뉴스TV                 | 지방세 체납자 압류물품 전국 첫 합동공매 <경기>        |
| 중앙지<br>(7) | 서울경제                   | 세금 체납자 압류 명품가방 공매                  |
|            | 국민일보                   | [포토] 압류 명품 가방 공매에 쏠린 시선            |
|            | 경향신문                   | [경향포토]고액체납자 압류 동산 첫 공매             |
|            | 서울신문                   | 고액 세금 체납자 압류품 공매                   |
|            | 한국경제                   | 경기도, 전국 최초로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강제 매각'     |
|            | 기타                     | 내외일보, 헤럴드경제                        |
| 지방지<br>(3) | 경기일보                   | 체납자 압류명품 공매현장 '인산인해'               |
|            | 중부일보                   | "명품보다 귀금속"...전국 첫 압류품 공매 700여명 북적  |
|            | 인천일보                   | 성남시청 고액 체납 압류품 공매 인파 '복새통'         |
| 통신사<br>(3) | 연합뉴스                   | 경기도 세금체납자 압류품 공개매각에 인파..낙찰률 90% 넘어 |
|            | 뉴스1                    |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행사 찾은 참가자들      |
|            | 뉴스스                    | 전국 첫 지자체 압류품 공매..500여명 몰려          |
| 기타<br>(72) | 평택시사신문, 국제뉴스, 파이낸셜뉴스 등 |                                    |

참고2

공매현장 사진



기관명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담당자 : 김종양(031-230-6682)

## &lt; 성과요약 &gt;

-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부족 및 지방소방예산 부족으로 인한 소방장비 노후율 급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가 반영되어 '15년 288억원 수입증대 발생

\* 지방세법개정('13.12.26, 대형화재취약대상 3배중과 규정 신설)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지방예산 97.9%, 국비 2.1%로 시·도의 소방예산 부담 증대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세출 기여도 점차 감소 ※ 1976년 60.8% → 2013년 29.1%
- 2013년 지방세법 개정당시, 소방차량 확보 예산 부족으로 노후율 급증 예상, (2013년) 20.1% → (2018년) 29.5%

## □ 개선내용

- 지방세제 개선포럼 1차 토론회('08.2.27)에 소방공동시설세 개선방안 제출
  - 대형화재취약대상물 등 건축물 화재 위험도에 따른 중과배수 조정 등 8개 과제를 2차 토론회 주제로 제출, 행안부 중장기 과제로 채택('08.5.30)
-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08.8.25) 소방공동시설세 개선방안 및 국비 확대방안을 포함한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재정특별법('09.2.24, 원유철 의원 외 83인 대표 발의) 입법발의, 18대 국회 입법기 종료로 폐기
- 이후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에 소방재정 확충을 건의('09.5~9월, '10.10.26, '13.3.25, '13.5.24, '13.7.15)
- '13년 안행부가 '08년 경기도에서 제출했던 제2차 제도개선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화재위험도에 따른 중과규정 개선을 정부입법 발의('13.11.15)
- 대형화재취약대상 중과세율 3배 중과 방안(지방세법 제146조제2항 제2의2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13.12.26).

## □ 개선효과

- 대형화재취약대상 3배중과 규정 신설 후 경기도에서 288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1,420억원의 세수가 증가됨** (2016년 지방세정연감)
-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의 특별회계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14.5.28) 및 경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16.11.8)
- 현장대응 골든타임(화재 8분, 구급 5분)에 근접한 소방력 운용, 촘촘한 소방력 배치를 통한 경기도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구석구석 찾아가는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등으로 경기도민 안전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000천원(기여자 김종양 외 6명)

## □ 기타 보충자료 설명(사진, 도표 등 첨부)

- 지역자원시설세(舊소방공동시설세)는 1961년 세목이 신설된 이래 과세대상의 확대가 없었고, 세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노후장비 교체, 소방관서 신설 등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는데 역부족이었음.
- 경기도에서는 소방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던 중 예산담당관실에서 개최한 「경기재정포럼 2차 토론회」(2007.08.31) 후속조치로 소방공동시설세 확충 추진기획단을 구성(2007.10.15)하고, 공동시설세 세수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하기 위하여 세정과 1명이 기획단에 참여함(2008.1.4).
- 지방세제 개선포럼 1차 토론회(2008.2.27)에 소방공동시설세 개선방안을 제출하였고,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과표 산정방식 개선, 대형화재취약대상물 등 건축물 화재 위험도에 따른 중과배수 조정 등 8개 건의과제를 2차 토론회 주제로 제출한 지방세법 개선방안이 행안부 중장기 과제로 채택(2008.5.30)되면서 소방재정 확충 가능성 및 시급성이 널리 알려지게 됨.
- 지방세법 개정 논리 정립 등 법률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방방재청과 공동 TF를 구성(2008.8.25)하였으며, 소방공동시설세 개선방안 및 국비 확대방안을 포함하여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재정특별법(2009.2.24, 원유철 의원 외 83인 대표발의) 입법 발의를 성사시켰으나 18대 국회 입법기 종료로 폐기되었음.
- 경기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에 소방재정 확충을 건의(2009.5~9월, 2010.10.26, 2013.3.25, 2013.5.24, 2013.7.15)하여, 그 결과 2013년 안행부가 2008년 경기도에서 제출했던 제2차 제도개선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화재위험도에 따른 중과규정 개선과 과표산정방식 시가방식 전환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였고(13.11.15), 대형화재취약대상 중과세율 3배 중과 방안(지방세법 제146조제2항 제2의2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13.12.26).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하여 개정(13.11.14. 입법예고, 국무회의 통과됨(13.12.26))

- 금번 지방세법 개정 결과, 안행부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전국 3,776억원, 경기도는 81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지방세정보화사업단 세수추계 결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인용),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14년 3배중과로 인한 부과액은 전국 2,031억원, 경기도는 474억원이며, 징수결과 15년도 세수 증가액은 전국 1,420억원 경기도 288억원임
  
- 소방재정 확충 및 소방력 개선으로 인한 현장대응 황금시간(화재 8분, 구급 5분)에 근접한 소방력 운용, 촘촘한 소방력 배치를 통한 경기도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구석구석 찾아가는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등으로 경기도민 안전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경기재정포럼 2차토론회 개최결과보고

- 소방재정 실태와 공동시설세 개선 필요성에 대한 각 계(학계, 언론, 정치 등)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소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
- ※ 중앙부처 관련공무원(김동완 지방세제관) 참여로 제도개선의 실현가능성 확인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07. 8. 31(금) 17:00~18:50 / 상황실
- 참석 : 21명(주재 : 도지사, 토론진행 : 오연천 교수)
  - 경기도(7명) : 행정1부지사 등, - 경기도의회(2명) : 조선미, 전동석 의원
  - 재정전문가(11명) : 오연천 교수 등 - 언론인(1명) : 경인일보 윤재준 부장

### ■ 주제발표

- 이원희 교수 : 공동시설세의 현황과 개선과제
  - 과세대상확대 : 유류, 가스, 화재 및 손해보험금 등
  - 지방재정법보완 :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관서 신설시 부지제공 근거마련
- 김동완 지방세제관 : 공동시설세의 현황 및 발전방안
  - 세율체계개편 : 단일비례세율(1.3/1,000)로 개편(이원희교수 같은의견)
  - 중과규정 현실화 : 화재위험도·수해도에 따라 중과세율 강화

### ■ 후속 조치계획

- 소방공동시설세 확충 논리개발, 지방세법·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추진
- 중앙/기초자치단체 역할정립, 소방재원 분담 추진

####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주관 : 소방재난본부, 협조 : 세정과, 예산담당관실
  - 임무 : 소방재원확충을 위한 논리정립 및 법령·제도개선안 건의 (필요시 후속연구, 포럼위원 자문·토론)
- ※ 김동완 지방세제관과 긴밀히 유대하며, 전국 소방본부 공조대응 추진

※ 제3차 토론회 개최예정(07. 11월 말), 주제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 《 토론 발표내용 요약 》

| 포럼위원(토론자)             | 주요 발표내용   |
|-----------------------|---|
| 서울대학교 교수<br>오연천       | ○ 포럼은 정책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  |
| 행정1부지사<br>정창섭         | ○ 국가/광역/기초 사무의 상역규명을 통한 매법 마련 필요<br>- 광역소방체계 도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필요   |
| 기획관리실장<br>한석규         | ○ 도의 소방비 부담이 한계점에 있음,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제공 의사가 있어도 관련법 저촉으로 불가능<br>⇒ 김동완 세제관 :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
| 경인일보 정치부장<br>윤재준      | ○ 소방공동시설세 제차누진세율 인상 필요<br>- 건물가액 상승 고려시 6,500만원이 최고세율은 불합리  |
| 서울대학교 교수<br>김성수       | ○ 부담금의 공동시설세 전환은 타당성 있음<br>- 부담금과 공동시설세의 중복되는 성격에 관하여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친 후 추진 필요  |
| 경기도의회 의원<br>전동석       | ○ 세금 추가부담은 국회의원 입법발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br>- 김동완 세제관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 당부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실장<br>임성일 | ○ 제차누진세율은 단일세율로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br>○ 국가/광역/기초의 역할과 비용분담은 향후 조정필요<br>○ 과세대상의 확대는 조세부담 고려 필요<br>- 유류, 전기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보험에 대한 과세 역시 Risk관리행위 자체에 세금 부과 어려움           |
| 경기대학교 교수<br>박능후       | ○ 용역과세는 외형적 크기/중수 보다는 위험도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구분함이 바람직<br>○ 목적세 이므로 특별회계 운영이 타당하나, 시설확충만 보면 오미려 줄여야 하는 문제점 있음<br>※ 향후 관련법규 개정 시 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인력비/보수비)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세법 수정필요 |
| 수원대학교 교수<br>오영균       | ○ 누진세율 단일세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br>○ 부족재원은 세수확대보다 세출축소 노력 선행필요  |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br>이용환   | ○ 소방재원 부족의 근본원인은 국가→지방 전환시점에서 재원이양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국고보조 확대 필요  |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 경기도



수신자 세정 과장  
(경유)

### 제목 2008년 지방세법(소방공동시설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

#### 1.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세 제팀-193( '08.1.16) 「'08년 제도개선 추진계획 송부 및 제도개선 과제 제출」
- 소방행정과-3814( '08.2.26)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소방공동시설세) 개선 추진 계획」

2. 위 호에 근거하여 불임과 같이 지방세법(소방공동시설세)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 하오니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 임 : 1.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소방공동시설세) 개선 추진 계획 1부,  
2. 지방세법(소방공동시설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서식 1부. 끝.

##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감

지방소방감

소방행정과장

####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825 ( 2008.02.27. ) 접수 ( )  
우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1번지 /http://fire.gyeonggi.kr  
전화 031-475-2119 /전송 (031)401-7119 /사용자xerox330@kg21.net /공개

“고객만족,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한 약속입니다”

| 현 행   | 개 정 안   |
|---|---|
| <p>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제242조(재산세의 준용)<br/> ① 재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의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p> | <p>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p> <p>② 제1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에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제242조(재산세의 준용)<br/> ① 재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의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p> |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p>제199조의2 (화재위험 건축물)</p> <p>①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p> <p>2. (생략)</p> <p>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이하 생략)</p> | <p>제199조의2 (화재위험 건축물)</p> <p>①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4층 이상의 건축물(다만, 주거전용 건축물은 11층 이상으로 한다.)로 하되, 다음 각급으로 구분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층별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과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층 이상 11층 이하<br/>(주거용 건축물 제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층 이상 17층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8층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100</td> </tr> </tbody> </table> <p>2. (현행과 같음)</p> <p>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u>안마시술소</u> <u>짐질방독서실</u> <u>고시원</u>. (이하 현행과 같음)</p> <p>나. ~자.(현행과 같음)</p> <p>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다음 각 급으로 구분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험물 시설별 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과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험물저장시설<br/>(지정수량 3,000배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험물취급소<br/>위험물저장시설<br/>(지정수량 3,000배 이상)<br/>가스취급소<br/>가스저장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험물제조소,가스제조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100</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층별 구분 | 중과세율 | 4층 이상 11층 이하<br>(주거용 건축물 제외) | 200/100 | 12층 이상 17층 이하 | 250/100 | 18층 이상 | 300/100 | 위험물 시설별 구분 | 중과세율 | 위험물저장시설<br>(지정수량 3,000배 미만) | 200/100 | 위험물취급소<br>위험물저장시설<br>(지정수량 3,000배 이상)<br>가스취급소<br>가스저장시설 | 250/100 | 위험물제조소,가스제조소 | 300/100 |
| 건축물 층별 구분  | 중과세율  |           |      |                              |         |               |         |        |         |            |      |                             |         |  |         |              |         |
| 4층 이상 11층 이하<br>(주거용 건축물 제외)   | 200/100   |           |      |                              |         |               |         |        |         |            |      |                             |         |  |         |              |         |
| 12층 이상 17층 이하  | 250/100   |           |      |                              |         |               |         |        |         |            |      |                             |         |  |         |              |         |
| 18층 이상   | 300/100   |           |      |                              |         |               |         |        |         |            |      |                             |         |  |         |              |         |
| 위험물 시설별 구분   | 중과세율  |           |      |                              |         |               |         |        |         |            |      |                             |         |  |         |              |         |
| 위험물저장시설<br>(지정수량 3,000배 미만)  | 200/100   |           |      |                              |         |               |         |        |         |            |      |                             |         |  |         |              |         |
| 위험물취급소<br>위험물저장시설<br>(지정수량 3,000배 이상)<br>가스취급소<br>가스저장시설   | 250/100   |           |      |                              |         |               |         |        |         |            |      |                             |         |  |         |              |         |
| 위험물제조소,가스제조소   | 300/100   |           |      |                              |         |               |         |        |         |            |      |                             |         |  |         |              |         |

**붙임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소방공등시설세) 제도개선 과제 1부. 끝.**

## 행정안전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08년 제2차 「지방세제 개선 포럼」 개최 계획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193(2008.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08년 지방세법령 개선과제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지방세제 개선 포럼」을 개최하고,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제2차 포럼('08.5.28-5.30)을 개최하고자 하니
3. 본 포럼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토론을 원하는 경우, 그 명단을 불임 양식에 의거 '08.5.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일시 : '08. 5. 29(목) 09:00~15:00 중  
나. 개최장소 : 경기도 파주시 유일레저(☎031-948-6161)  
다. 참석대상 : 건의부처(기관) 지방세 업무 담당자

불임 : 제출양식(참석대상자 명단) 1부. 끝.

###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국토해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림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경기도지사(소방행정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지방세 담당)

유출권

서기관

지방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880 ( 2008.05.16. ) 접수 소방행정과-880 ( 2008.05.16. )

무 110-78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 / www.mopas.go.kr

전화 02-2100-3919 /전송 02-2100-3930 / ojuing55@mopas.go.kr / 공개

□ **신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법령**(지방세법 제146조제2항2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p> <p>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p> <p>1. (생 략)</p> <p>2. <u>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 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 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 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 다.</u></p> <p><u>&lt;신 설&gt;</u></p> | <p>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br/>-----.</p> <p>1. (현행과 같음)</p> <p>2. <u>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 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u></p> <p><u>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 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 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 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 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u></p> |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2014.1.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2 - 2100 - 3946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br>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br>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br>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br>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 2014.1.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2 - 2100 - 3949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4.6, 2014.1.1>

-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음식점
  -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 사. 공장
  -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락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 1)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2)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 1) 도매시장
    - 2) 소매시장
    - 3) 상점
  -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4.1.1>

[제목개정 2014.1.1]

기관명: 수원시 세정과

담당자: 이진이 (031-228-3183)

## &lt; 성과요약 &gt;

- 정기세무조사 고액세원발굴 및 관리사업장 대규모 건물에 대한 임차사업장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소규모 연구소 및 입주 공장 등에 대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소액세원 추징으로 1,026백만원 수입증대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정기 세무조사 시 법인소유 및 관리의 대규모 건물의 임차사업장의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세원누락 여지 존재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정기세무조사와 입주사업장 현장조사를 병행하기 어려움
- 00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3개동 대규모 건물에 120여개의 법인이 입주하고 있었으나,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법인세분) 등 시세 전 세목의 적정납부 확인 필요성 제기됨
- 큰 법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성실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현미경방식의 세무조사가 필요하였음.
- 세무조사는 세원발굴 및 추징이라는 목적이외에 성실납세환경 조성 및 유도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세정이 필요함.
- 한 평의 사업장과 한명의 종업원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본사의 매출액이 큰 경우는 우리 시가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비율이 적더라도, 세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꼭 필요하였으나, 전체적인 조사는 세정 환경 상 어려웠음

## □ 개선내용

- 추진기간 : 2015.07.29. ~ 2015.11.30.
- 추진경과
  - 임차사업장 기획세무조사 실시
    - 2015. 7. 29 : 추진계획 수립
    - 2015. 7. 29 ~ 8.10 : 조사 협조요청 공문 발송(120회)

- 2015. 7. 29 ~ 8. 24 : 현장방문 및 면담·조사 실시
- 2015. 8. 26 : 기획세무조사 경과보고
- 2015. 9. 1. ~ 9.30 : 추가 조사
- 2015. 10. 2 : 기획세무조사 결과보고
- 2015. 8. 5 ~ 11.30 : 기획조사 결과통지 및 부과징수

- **고액탈루의심 법인 숨은 세원 발굴 추진**

- 2015. 6. 15 : 세무조사 사전통지(000티)
- 2015. 7. 15 ~ 7.16 : 세무조사 실시(000티)
- 2015. 7. 21 : 세무조사 결과 통지(000티)
- 2015. 8. 6 : 추징세액 부과지시(000티)
- 2015. 8. 10. : 추징세액 653백만원 완납(000티)
- 2015. 10. 1 : 현장 출장복명(000트)
- 2015. 10. 20 : 세무조사 사전통지(000트)
- 2015. 11. 12 : 세무조사 실시(000트)
- 2015. 11. 20 : 세무조사 결과 통지(000트)
- 2015. 12. 6 : 세무조사 부과지시(000트)
- 2015. 12. 31 : 추징세액 289백만원 완납(000트)

○ 추진내용

- 정기 세무조사 법인에게 관리건물의 입주자 명부 전체를 받음.
- 정기 세무조사 법인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대상법인의 추징세액 확정 전에 모든 자료를 받음.
- 120여개가 넘는 법인 및 개인이 입주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상 구체적인 임차사업주의 현황이 없는 경우도 많았음.
- 건물 전체를 일일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의 제출현황과 대사 실시
- 사업장이 폐문인 경우도 많았고, 입주자 명단의 연락처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현황파악에 애로가 많았음.
- 사업장의 상호 등을 기초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가 유사한 사업장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팩스로 공문 송부, 사업장 인근 입주자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문하여 접촉 시도
- 어떤 사업주는 단순 연구소 몇 평에 불과하고 인원도 한 둘 밖에 없다고 거세게 항의하였으나, 주민세 등 인적·물적 설비에 대해

- 설명하고, 주민세·지방소득세 등의 세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세세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였음.
- 당초 법인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경우에도 책임있는 담당자 등의 부재로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서 추징세액을 받을 수 있었음.
  - 많은 임차사업장이 충청도 등 지방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다수였고, 이들은 본사 관할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납부하고 있어 본 조사에 대한 추징내역에 불만이 많았음.
  - 본청 세무조사 직원이 팀장 외 2명으로 매우 적은 인원으로 2015년 조사대상 법인 85업체 외에 임차사업장을 추가로 직접 조사했어야 되어 절대적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였으나, 조세형평성과 자주재원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를 극복함.
  - 당초 7. 29 ~ 8.30 에 임차사업장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장의 자료제출 지연, 면담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 통상적인 세무조사 자료를 추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의성 있는 고액의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법인 2개소에서 949백만원을 추징할 수 있었음.
  - 고액 세원발굴의 경우 법인대표자와 담당자를 적극 설득하여 큰 무리 없이 추징

## □ 개선효과

### ○ 세원발굴 및 추징세액 실적 : 12건/1,026,064천원

| 구분 | 합계              | 임차사업장 기획     | 고액 세원발굴      |
|----|-----------------|--------------|--------------|
| 금액 | 12건/1,026,064천원 | 10건/83,035천원 | 2건/943,029천원 |

- 조사실적 : 120개소 완료로 임차사업장의 장래 성실납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세수안정화에 기여함.
- 임차사업장의 전반적 조사를 위해서는 대규모건물의 소유주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였으므로, 소유법인 세무조사시 임차사업장 현장조사 병행은 매우 효율적이었음.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500천원(기여자 이진이 외 3명)**

# 5

##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판매 수익금

기관명 : 수원시 하수관리과

담당자 : 이선국(031-228-3636)

### < 성과요약 >

- 수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시키고,
- 발생한 소화가스를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 후 잉여 소화가스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 판매하여 에너지 절감 및 세외수입 창출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수원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바이오가스)를 소화조 가온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가스는 잉여가스 연소기를 통해 소각 처리
- 잉여 가스분은 소각 처리되어 자원 활용 효율성이 떨어짐

### □ 개선내용

- 기존에는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운영 중 발생한 소화가스를 자체가온 하고 남은 잉여가스를 소각처리 하였으나,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건조 시설까지 배관을 설치하여 공급, 판매하므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세외수익 창출.
- 수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사와 「소화가스 공급사용 협약」 을 체결하여 버려지던 소화가스(바이오가스) 판매로 세외수입을 증대

### □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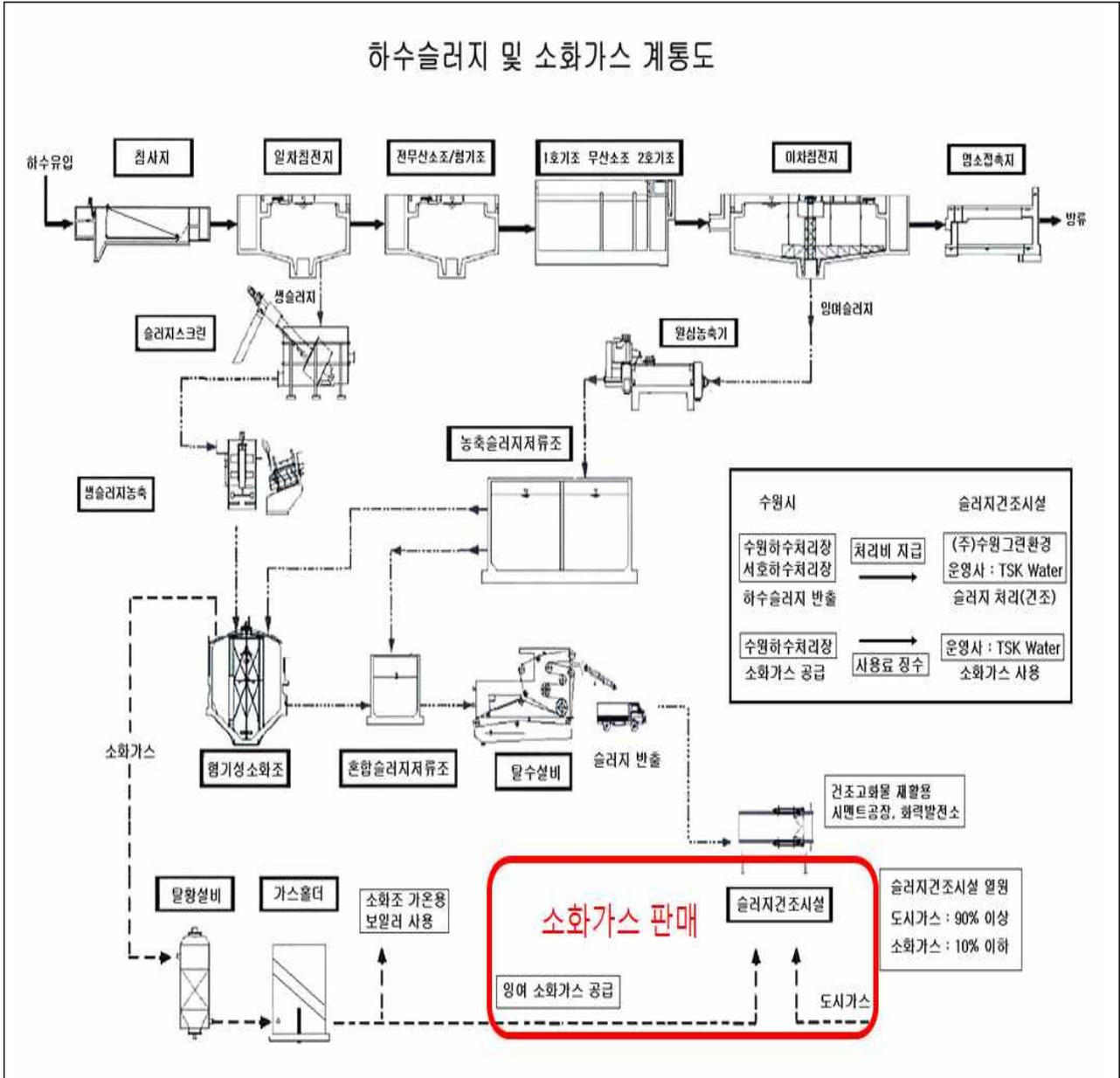
- 소화가스 판매수익 창출

| 년 도        | 소화가스 판매현황 |                    | 비고 |
|------------|-----------|--------------------|----|
|            | 사용량(Nm³)  | 판매금액(원)            |    |
| 2014년      | 223,109   | <b>66,040,380</b>  |    |
| 2015년      | 238,509   | <b>70,598,710</b>  |    |
| 2016년 9월까지 | 197,013   | <b>58,315,980</b>  |    |
| 계          | 658,631   | <b>194,955,070</b> |    |

▶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000천원(기여자 김철우 외 3명)

**참고**

**소화가스 계통도(수원시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판매)**





소화조 및 소화가스 배관



소화가스 탈황설비



가스홀더(저장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및 소화가스 유입 배관

※ 하수 처리 과정 중 슬러지가 발생 → 혐기성소화조에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 중 소화가스(바이오가스)가 발생 → 소화가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가스에 포함된 황 성분과 습기를 제거 → 탈황 및 제습처리 된 소화가스는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 → 수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 이전에는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하고 남은 소화가스를 잉여가스 연소기로 소각처리 → 소화가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건조시설까지 배관을 설치하여 잉여소화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사와 소화가스 공급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잉여 소화가스 판매로 세외수입을 창출

- ① 2014. 5. 12 : 「수원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준공
- ② 2014. 6. 24 : 소화가스 슬러지처리장 활용계획(안) 보고
- ③ 2014. 7. 31 : 수원시와 수원그린환경(주) 간 소화가스 공급사용 협의
- ④ 2014. 10. 21 : 소화가스 공급 판매단가 산출용역 착수
- ⑤ 2014. 12. 22 : 소화가스 공급 판매단가 자문회의
- ⑥ 2014. 12. 23 : 소화가스 공급 판매단가 산출용역 완료
- ⑦ 2015. 1. 19 : 수원하수처리장 소화가스 공급 사용 협약체결(안)보고
- ⑧ 2015. 1. 29 : 수원하수처리장 소화가스 공급 사용 협약체결
- ⑨ 2015. 2. ~ : 소화가스 공급 사용료 부과징수

기관명 : 고양시 징수과

담당자 : 신희동(031-8075-2231)

### < 성과요약 >

- 체납법인의 압류되어 있는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공매 의뢰하여 체납결손액 324,078,400원을 징수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들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더라도 타기관의 압류통지보다 늦어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후순위 채권으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기간 방치

### □ 개선내용

-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특성상 일정규모의 건축행위에 앞서 보험적 성격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공사 완료 후 하자가 없을 시 일정 기간(2년 또는 5년 이상)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음과,
-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통지가 아니라 점유에 의해 발생함을 인지하고 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의 보증 만료기간 확인 후 인도받아 공매의뢰

### □ 개선효과

- 6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매각대금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를 제외한 결손체납액 324,078,400원을 징수
- 공제조합의 종류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이 있음을 파악
- 건설공제조합 1건, 전문건설공제조합 9건 등 약1억6천정도 압류하고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공매의뢰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000천원(기여자 신희동 외 1명)

**참고****공매결과**

(단위: 천원)

| 체납자      | 공매물건      | 체납액       | 매각가     | 총당액     | 총당일        |
|----------|-----------|-----------|---------|---------|------------|
| 계        | 출자증권 252좌 | 1,550,601 | 334,408 | 324,078 |            |
| **종합건설   | 출자증권 32좌  | 375,345   | 43,681  | 42,303  | 2015.11.18 |
| **종합건설   | 출자증권 45좌  | 106,783   | 61,426  | 59,545  | 2015.11.18 |
| ****종합건설 | 출자증권 22좌  | 89,563    | 29,641  | 28,669  | 2015. 9.24 |
| **건설     | 출자증권 64좌  | 89,277    | 88,385  | 85,700  | 2015.12.30 |
| **종합건설   | 출자증권 67좌  | 867,774   | 91,685  | 88,913  | 2015.12.23 |
| **엔지니어링  | 출자증권 22좌  | 21,859    | 19,590  | 18,948  | 2015.12.30 |

기관명 : 성남시 공원과

담당자 : 천광희(031-729-4264)

## &lt; 성과요약 &gt;

-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주의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국토교통부 명의로 공탁된 공탁금을 행정권한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소유권을 20년 전으로 소급 확보하여 공탁금 89억원을 시 수입으로 전환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번지 등 5개 필지는 1996. 1. 27.부터 시행된 성남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지로 분당지구 택지개발 완료 후부터 공원과 녹지에 조성되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 한편,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8. 28. 한국전력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승인하였는데, 위 5개 필지가 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보상을 진행하게 되었음
-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토지를 분당지구 택지개발 후부터 사실적으로 관리를 하여 왔고,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는 성남시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권리자(국토교통부)와 토지대상상의 권리자(성남시)가 일치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었음
- 위와 같이 우리 시 수입이 국고수입으로 처리될 상황에 이르자 우리 시에서는 분당지구 택지개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주택공사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20년 전 당시 한국주택공사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성남시로 하는 명의변경을 등기소에 신청하였는데, 당시 등기소에서 위 필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누락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 이에 우리 시에서는 법원(분당등기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원(등기소)에서는 이미 20여년 전의 등기촉탁신청서 등 관련문서의 폐기로 확인이 불가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상 등기부상의 권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서 첨부를 요구하게 되었고
-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 변경 동의 및 공탁금 출금 동의를 구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탁금을 출금한 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사정이 위와 같게 되자, 우리 시로서는 위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공탁금을 시 수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원(등기소)를 상대로 20년 전에 부동산 명의변경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 □ 개선내용

- 불필요한 소송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차단
  - 우리 시에서는 위 토지를 20년 전부터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하여 왔으나, 부동산의 소유권 인정에 대한 등기주의를 취하고 있는 실정법상 등기권리자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어 위 토지에 대한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 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한국토지주택 공사를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분당등기소(법원)를 상대로는 '등기이전의 의무를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행정권한 위임 규정을 근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공된 1996. 1. 27.자로 우리 시에서 소유한 것으로 소급 등기이전하게 되었음

## □ 개선효과

-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96. 1. 27.자로 우리 시에서 취득한 것으로 소급하여 등기를 마침으로 해서 위 토지보상금으로 공탁된 89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을 통하여 행정절차상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귀속시키고 그 후 또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로 귀속시킨 후 재차 한국전력공사로 귀속시켜야 하는 비용과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임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000천원(기여자 천광희 외 2명)

기관명 : 용인시 교통정책과

담당자 : 정은석 외 4명(031-324-2427)

## &lt; 성과요약 &gt;

- 현행 읍면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읍면지역 시설물 중 교통혼잡이 심한 대형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15년 460,245천원 수입증대 발생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던 읍면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읍면지역 시설물 중 교통 혼잡이 심한 대형시설물에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 □ 개선내용

- 추진경위
  - 2013.08.29. 교통유발부담금 전국 읍면지역 부과현황 조사
  - 2013.09.09.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의견조회
  - 2014.01.28.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2014.08.01.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개정
  - 2014.12.04. 읍면지역 부과대상시설물 부과사전통지 및 감축활동 안내
  - 2015.07.01.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 2015.10.08. 읍면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173건, 502,157천원)

## □ 개선효과

- 읍면지역 신규 부과로 인한 세입증대
- 교통혼잡시설물에 대한 부과로 형평성 개선
  - 읍면 지역 신규 부과로 460,245천원 세입증대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0,000천원(기여자 정은석 외 4명)

기관명 : 광주시 징수과

담당자: 이학순(031-760-4911)

## &lt; 성과요약 &gt;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세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징수기반 조성에 기여한 사례임.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공간정보, 행정정보를 융합·활용한 과세정보 제공 필요성 대두
  - 현재 개별 정보시스템에 폐쇄적 단편적 접속 및 답습적 과세정보 추출
  -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기법 부족 등으로 누락·탈루 세원 발생
  - ⇒ 세입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누락·탈루 세원 발굴 한계 극복
- 업무 담당자의 니즈(Needs)에 맞춘 시스템 개발 필요
  - 입체적이고 시각화된 “One-Stop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 고조
  - 부서간 과세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통을 위한 협업시스템 부재
  - ⇒ 융합자료 One-Stop 제공, 신속·정확한 소통·협업시스템 구축 필요

## □ 개선내용

-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 공공재산(도로, 하천, 공유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누락·탈루 세원 발굴·예방을 위하여 부서간 협업, 공조체계를 구축
  - 공재산의 무단 점유, 불법 사용 등 누락·탈루 의심 대상지 추출 지원
  - ➡ 공간정보 및 세입과세자료 활용한 「비 예산」으로 구축 운영
  - ※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화면 및 주요 기능, 발굴 사례 : 별첨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
  - 행정정보(지방세입과세자료 등)와 공간정보의 융합·분석을 통한 세입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하여,
  - 한눈에 모든 세입과세자료를 확인, 점검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세입 과세지역 또는 누락·탈루 의심지역 추출

- 원클릭 세입정보 통합 조회 및 관리
  - 개별시스템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세입과세자료, 토지, 건축물 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등)를 「클릭 한번」으로 다양한 정보 조회 가능
  - 「로드뷰」기능을 탑재하여 현장 조사 전 개인 PC를 통한 누락·탈루 의심 대상지 및 주변 사전 조사 가능
- 효율적, 경제적으로 공공재산 관리
  -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재산 등 일제조사 시 사전 무단 점유지 추출 및 사전 조사 기능까지 가능하여 조사인력, 시간적으로 획기적인 절감
  -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실시간 자료 공유로 부서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구성
  -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활용한 과학적인 세입과세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간 공평과세 실현 및 줄줄 세고 있는 세원발굴로 재정확충 기여

## □ 개선효과

- 누락세원 발굴 : 196백만원

(단위:천원)

| 구분 | 계       | 부과 현황  |        |        |        |       |
|----|---------|--------|--------|--------|--------|-------|
|    |         | 오폭음    | 초월음    | 근자암음   | 도착면    | 퇴촌면   |
| 건수 | 83      | 29     | 15     | 10     | 10     | 19    |
| 세액 | 196,203 | 95,000 | 49,408 | 29,672 | 14,211 | 7,912 |

- 시스템 자체 개발·구축으로 예산절감 : 50백만원
- 2016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2016.5월) 「경기도」
- 2016 지방세정 우수사례 선정 『우수』 수상 (2016.8월) 「지방세연구원」
-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 수상 (2016.8월) 「국토부」
- 2016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 수상 (2016.11월) 「행자부」

▶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100천원(기여자 이학순 외 3명)

**참고**

**예산절감, 수입증대 우수사례 참고자료**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융합



원클릭  
행정정보  
통합조회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정비 대상지  
다중 추출 및  
대장/도면 출력

| No. | 면적 | 위치              | 용도지역  | 연년    |
|-----|----|-----------------|-------|-------|
| 1   | 1  | 소출물 산출리 415-1 일 | 14 도요 | 2014년 |
| 2   | 2  | 소출물 산출리 398-2 일 | 14 도요 | 2014년 |
| 3   | 3  | 소출물 산출리 398-3 일 | 14 도요 | 2014년 |
| 4   | 4  | 소출물 산출리 398-2 일 | 14 도요 | 2014년 |
| 5   | 5  | 소출물 산출리 398-1 일 | 14 도요 | 2014년 |
| 6   | 6  | 소출물 산출리 340-2 일 | 14 도요 | 2014년 |
| 7   | 7  | 소출물 산출리 420 일   | 14 도요 | 2014년 |
| 8   | 8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9   | 9  | 소출물 산출리 309 일   | 14 도요 | 2014년 |
| 10  | 10 | 소출물 산출리 340-2 일 | 14 도요 | 2014년 |
| 11  | 11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2  | 12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3  | 13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4  | 14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5  | 15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6  | 16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기독성 확보를  
위한  
마스킹 기능

행정정보  
통합 조회

| No. | 면적 | 위치              | 용도지역  | 연년    |
|-----|----|-----------------|-------|-------|
| 1   | 1  | 소출물 산출리 415-1 일 | 14 도요 | 2014년 |
| 2   | 2  | 소출물 산출리 398-2 일 | 14 도요 | 2014년 |
| 3   | 3  | 소출물 산출리 398-3 일 | 14 도요 | 2014년 |
| 4   | 4  | 소출물 산출리 398-2 일 | 14 도요 | 2014년 |
| 5   | 5  | 소출물 산출리 398-1 일 | 14 도요 | 2014년 |
| 6   | 6  | 소출물 산출리 340-2 일 | 14 도요 | 2014년 |
| 7   | 7  | 소출물 산출리 420 일   | 14 도요 | 2014년 |
| 8   | 8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9   | 9  | 소출물 산출리 309 일   | 14 도요 | 2014년 |
| 10  | 10 | 소출물 산출리 340-2 일 | 14 도요 | 2014년 |
| 11  | 11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2  | 12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3  | 13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4  | 14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5  | 15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16  | 16 | 소출물 산출리 307 일   | 14 도요 | 2014년 |

## 공유재산 관리 현행화

**토지대장 공유재산 주제도**

**토지대장·지적도 융합**

**관리대장 공유재산 주제도**

**관리대장·지적도 융합**

**공유재산 정비대상 주제도 생성**

**토지대장vs관리대장 간 불일치**

**주제도 중첩 비교**

**'관리대장 누락' 확인**

**토지대장 확인**

## 공유재산 무단점유 발굴 사례

**국공유재산 주제도**

**수치지형도 건물**

**수치지형도 건물레이어 추출**

**대부현황 주제도**

**대부대장·지적도 융합**

**사용수익허가주제도**

**사용수익허가대장·지적도 융합**

**불법점용 추정 주제도 생성**

**수치지형도 건물 중 대부필지에 인접하는 건물 제외, 국공유지에 인접하는 건물 추출**

**주제도 중첩 비교 및 대장확인**

**'하천 무단점유'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 도로점용료 누락·탈루자료 발굴 사례

**국공유재산 주제도**

**도로사용료 주제도**

**도로사용료·지적도 융합**

**도시계획도**

**도로구역선**

**과세건물 주제도**

**과세대장·지적도 융합**

**도로사용료 미납추정 주제도 생성**

**도로구역선 인접 과세건물 중 도로사용료 미납 건물 추출**

**주제도 중첩 비교 및 현장확인**

**'도로사용료 부과 누락 대상지'**

**'도로진출입로' 확인**

**로드뷰를 통한 현장 사전 확인**

**도로사용료 부과대상 면적**

기관명: 부천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임항헌(032-625-4900)

## &lt; 성과요약 &gt;

-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57억 3백만원 확보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합리적 토지 이용 및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해 일정부분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 및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적절한 환수제도가 전무하여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한 실정임.(법률적 근거가 없음)
- 장기간 방치된 토지로 인한 도시 슬럼화 발생으로 지역주민 민원 발생

## □ 개선내용

-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제도를 마련함.
- 상동 413번지(호텔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1년의 기간 동안 총 18회에 걸친 협상회의 및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협상 및 협약서를 체결하여 **57억 3백만 원의 재정수입 증대**

## □ 개선(추진)효과

-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의 지속 운영 및 제도화를 통해 **향후 1,000억 원 이상의 시 재정 수입 증대 예상**
- 중앙정부에 근거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 가능한 모범 제도임.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000천원



언론보도자료 경기일보 2013. 1. 23.(수)

##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김종구 기자 hightop@kyeonggi.com | 노을송인 2013년 01월 22일 15:18 | 발행일 2013년 01월 23일 수요일 | 제0면

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천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사)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을 의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민공람 등 시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적용대상은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변경, 공업지역 이전적지 등이다.

협상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市)가 최종 30일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협상안을 작성,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협상을 완료한다.

김홍배 시 도시주택국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제한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이끌어 민간업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아래 시는 일정한 공공기여를 제안한 민간업자에게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기관명 : 부천시 세정과

담당자 : 신정식(032-625-2596)

## &lt; 성과요약 &gt;

-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법 규정 및 지침을 악용한 업체에 대해 세금을 환수하여 취득세 5건 2억 8천8백만원의 수입 증대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창업 후 최대 7년간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악용하여 창업의 외형만 빌려 부당하게 감면 받는 사례가 생김. 관내 아파트형 공장 취득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세무사의 지도하에 별도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서 창업벤처기업으로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음.

## □ 개선내용

- 관련 법규와 해석 지침을 엄격하게 제한 적용하는 논리로 접근하고, 사업장의 수년 간 운영 실태를 철저히 확인 분석하여 창업에 해당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과세 전환함.(입법 취지에 맞는 엄격한 제한 해석)
- 2013년 과세 전액 납부 후 3회에 걸친 불복 절차 후 2015년 2월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으로 종료되어 세입 최종 확정함.
- 세정과 연찬회 연구발표를 통해 직원 공유

## □ 개선효과

- 유사한 악용사례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조세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세원 누락을 차단함(**관내 A법인 창업감면법인 3억 5천9백만 원 추징**)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500천원

기관명 : 군포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 오숙 (031-390-0805)

## &lt; 성과요약 &gt;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5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다문화카페 레인보우(군포시당정로 28번길 22) 건물 내외 시설공사 추진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1992 5. 27 (국)경찰청 소유권이전(치안센터 통폐합으로 건물 방치)
- 2014. 1 10. 군포시 소유권 이전
- 2015. 1 5. 여성가족과 관리전환
- 2015. 4. 28. ~ 현재 : 이주민카페
-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대비하여 공단 지역 내 외국인 지원시설 필요성 대두
- 26년 경과한 노후한 건물 및 주변 토지(주차장, 텃밭)로 정비 시급
-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 개선내용

- 추진경과
  - 2015. 8. 27 『2015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공모
  - 2015. 11. 12 최종 대상지 선정 알림: 군포시 등 3개소  
→ 선정내용 : 공간구성 및 컨설팅 지원 - **시설공사비 전액 199,697천원**
  - 2016. 1. 19 시설공사 입찰 공고(조달청) 및 낙찰 업체 계약
  - 2016. 3. 20 공사 완료 및 준공
- 수입증대 내용
  - 리모델링 시설공사비: 199,697,363원(입찰 기초 금액)
  - 시설규모: 연면적 139㎡, 토지 575㎡
  - ※ (변경 전) 지하-2층 → (변경 후) 1층 증축, 개방형담장, 미니도서관, 야외쉼터공간 등

- 2015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 (구)당정치안센터의 노후한 건물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5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간구성 및 컨설팅 지원 받음.

## □ 개선효과

- 공모사업으로 선정으로 외부재원을 확보(100%)함으로써 군포시 세입증대
- 26년이상 노후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외국인 및 이주민 지원 공간 마련과 공단지역 활성화 도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000천원(기여자 오숙 외 2명)

기관명 : 오산시 징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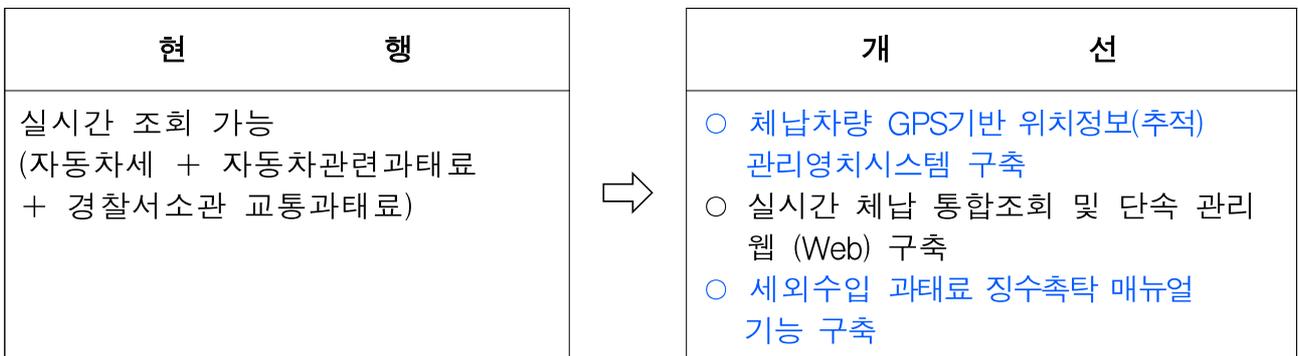
담당자 : 손창완 (031-8036-7223)

< 성과요약 >

- 체납차량 GPS기반 영치시스템 및 DB 구축을 통하여 단속종합계획 수립 및 타지역에 유효한 정보 제공
- 축적된 정보를 통해 표적 영치 활동이 용이하며, 신규 체납차량 발생 시 장기 체납 미연에 방지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오산시 영치대상 체납차량 체납액은 97억원(자동차세 31억원, 과태료 66억원)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도 40억원으로 체납단속 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단속 및 정리대책이 절실
- 또한, 체납단속 일선에서 단속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고질 체납차량 및 불법 대포차량이 하루에도 수십여 차례 앞뒤로 지나감에도 이를 전국 어디서나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특정장소와 특정 시간외에는 단속을 수행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 등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영치체계로의 개편이 필요



## □ 개선내용

### ○ 체납차량 GPS기반 위치정보(추적) 관리 영치시스템 기능 구축

- 탑재형 영치시스템으로 영치 활동 시 인식된 차량 번호를 GPS 빅데이터 예측 시스템에 탑재(누적관리)하여 체납 차량 발견 및 조회 시 위치 추적 관리가 가능토록 구현
- 주행 중 체납차량에 대한 위치데이터의 통계화를 통해 맵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활용으로 체납데이터 통계관리 GPS 시스템 구현가능
- 또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통해 체납·대포차량을 적발 시 담당 직원에게 SMS 또는 유선 전화로 위치정보 안내 가능

### ○ 실시간 체납 통합조회 및 단속 관리 웹 (Web) 구축

- 영치시스템을 통한 영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경찰서 소관 교통 과태료 체납 내역이 실시간으로 통합조회 가능하고 체납 차량의 적발 통계와 단속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 고질 고액 체납차량을 현장 출동하여 영치가 가능

⇒ 고질 체납 및 대포 차량 위치 추적 단속 기능

### ○ 세외수입과태료 징수촉탁 매뉴얼 기능 구축

-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촉탁 정산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세외수입과태료 징수촉탁 협약 추진 및 통합 단속 관리, 징수촉탁수수료 정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지방자치단체 간 세외수입 과태료의 징수 촉탁단속 가능 법률에 근거

## □ 개선효과

### ○ 체납차량 GPS기반 영치시스템 가동시 적발 및 징수 실적

| 구              | 분     | GPS 단속위치 적발건수 |      |        |     | 징수<br>건수 |
|----------------|-------|---------------|------|--------|-----|----------|
|                |       | 1회적발          | 2회적발 | 3회적발이상 | 합 계 |          |
| 체납<br>차량       | 관 내   | 410           | 289  | 57     | 756 | 548      |
|                | 징수촉탁  | 125           | 207  | 80     | 412 | 363      |
| 관외<br>불법<br>차량 | 대포차량  | 25            | 18   | 15     | 58  | 46       |
|                | 보험미가입 | 8             | 5    | 10     | 23  | 15       |
|                | 검사미필  | 6             | 7    | 2      | 15  | 9        |
|                | 형사고발  | 7             | 2    | -      | 9   | 6        |

※ 테스트 기간 : 2016. 8. 1 ~ 9. 30

### ○ 체납차량 GPS기반 영치시스템 운영 성과

- 적발 횟수 통계 데이터로 시 관내 지역별 체납 차량 분포 파악  
→ 체납 차량 적발된 지역적인 집중도에 대해 단속 계획 수립으로 표적영치 활동이 용이
- 대포 차량 등 체납 차량 적발 위치에 대한 정보 DB 구축  
→ 지속적인 정보 수집으로 빅데이터 정보의 유효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포차량, 고질체납 차량의 위치 추적을 통한 성향 (다수적발 지역, 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체납 정책 수립 및 타 지역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

### ○ 체납 통합 단속시스템 구축

- 오산시에서 적발되는 타시군 체납 차량에 대해 기존 지방세 징수 촉탁 외에도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촉탁 정산 시스템을 구축 체납 세무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 관내 경찰서와의 체납·대포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공조체계(협업) 구축하여 현장 합동단속 협업으로 즉각적인 체납처분 효과 입증

### ○ 체납액 징수촉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조세 납세의식 제고 및 자동차 관련 체납징수액 획기적 증대
-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을 통한 파급효과에 따라 신세원 창출



기관명 : 오산시 징수과

담당자 : 김현주(031-8036-7231)

## &lt; 성과요약 &gt;

-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및 SMS를 통한 체납징수관리의 효율성도모 및 징수실적 제고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 1천만원 미만 체납자의 금융정보는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거래 정보를 요구하여야 함. 하지만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 수가 많고 금융기관의 각각의 특정 점포마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금융기관의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채권확보의 적시성이 떨어짐.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나이스 신용정보회사의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통해 제1금융권의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많은 지자체들이 제2금융권의 예금 압류를 포기하더라도 관내 제2금융권의 특정점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오산시와 같은 중소 도시 또는 도농복합도시들은 대도시와 달리 관내에 제2금융권 점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오산시의 경우 32개 금융기관중 15개 점포, 46.9%가 제2금융권임),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제1금융권인 일반 은행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제2금융권으로의 예금이 늘어나고 있으나 제2금융권에 대한 압류는 저조한 상황임.

○ 소액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증가

- 소액 세외수입 체납의 주요 과목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해도 지나치기 쉬우며,
- 자동차 소유자의 연령층이 젊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쉽지 않으며 과태료 금액도 소액으로 납부에 소홀해져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는 차량 명의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의식이 전반적이라 용이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

○ 오산시 예금 압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 지방세           |             | 세외수입          |             | 비 고      |
|---------|---------------|-------------|---------------|-------------|----------|
|         | 압류액(건수)       | 징수액(건수)     | 압류액(건수)       | 징수액(건수)     |          |
| 2014년   | 4,042(3,490건) | 489(516건)   | 2,073(7,231건) | 298(1,508건) | 제1금융권    |
| 2015년   | 3,491(5,107건) | 385(1,252건) | 938(5,506건)   | 270(1,624건) | "        |
| 2016.9월 | 3,170(8,196건) | 172(589건)   | 3,249(7,944건) | 145(562건)   | 제2금융권 포함 |

○ 분할납부자에 대한 수기 관리

-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누어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당자의 수기 관리로 담당자 업무 과중과 함께 담당자 인사이동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예금액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12년     | 2013년<br>(전년대비 증가율) | 2014년<br>(전년대비 증가율) | 2015년<br>(전년대비 증가율) | 2016.6월<br>(전년대비 증가율) |
|--------|-----------|---------------------|---------------------|---------------------|-----------------------|
| 계      | 1,416,765 | 1,443,639           | 1,539,241           | 1,655,392           | 1,712,876             |
| 제1금융권  | 990,273   | 1,009,685<br>(2.0%) | 1,080,543<br>(7.0%) | 1,163,727<br>(7.7%) | 1,200,900<br>(3.2%)   |
| 제2금융권  | 426,492   | 433,954<br>(1.7%)   | 458,698<br>(5.7%)   | 491,665<br>(7.2%)   | 511,976<br>(4.1%)     |
| 상호저축은행 | 42,813    | 33,120              | 32,387              | 37,646              | 40,615                |
| 신용협동조합 | 48,824    | 50,225              | 53,639              | 58,332              | 62,197                |
| 상호금융   | 242,724   | 252,681             | 266,617             | 283,663             | 291,796               |
| 새마을금고  | 92,131    | 97,928              | 106,055             | 112,024             | 117,368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개선내용

- 소액 체납자 SMS 문자발송으로 현년도 과태료 징수
  - 주정차 위반 등 소액 과태료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으로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과 함께 독려 실시
  - 전화 문의 시 전화민원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한 번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전체 체납액 납부안내 및 독려
- 매월 분할납부 약속자에게 약속일에 납부독려 문자발송
- 제2금융권 예금압류 및 추심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위주의 제2금융권 거래내역 확보
  - 제2금융권 예금압류 및 납부독려
  - 예금액 추심 및 완납되지 않은 체납자에게 분납유도

## □ 개선효과

- KCB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2금융권 금융거래 정보 활용
  - 제2금융권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KCB 신용정보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단위농협 및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의 예금 압류를 적시에 추진
  - 2016년 예금압류 및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지방세           |           | 세외수입          |           | 비 고     |
|-------|---------------|-----------|---------------|-----------|---------|
|       | 압류액(건수)       | 징수액(건수)   | 압류액(건수)       | 징수액(건수)   |         |
| 계     | 3,170(8,196건) | 172(589건) | 3,249(7,953건) | 145(562건) |         |
| 제1금융권 | 2,788(7,584건) | 125(481건) | 3,209(7,944)  | 139(555건) | 4.4%징수  |
| 제2금융권 | 382(612건)     | 47(108건)  | 40(9건)        | 6(7건)     | 12.6%징수 |

※ 제2금융권 : 압류액 대비 징수실적이 제1금융권에 비해 8.2% 많음

○ 휴대폰 문자전송을 통한 소액 과태료 징수

- 신용정보회사의 휴대폰 정보를 활용하여 소액 과태료 체납내역을 문자 독려하여 카드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유도함. 차량 소지자의 경우 젊은 층이 많아 고지서 납부보다 효과적인 ARS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이체 안내와 함께 전화문의 시 전화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타 세목의 납부안내도 병행 실시
-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 부과액(A)      | 징수액(B)     | 징수율(%) | 비 고    |
|--------|-------------|------------|--------|--------|
| 경기도 전체 | 113,981,259 | 64,802,860 | 56.85  |        |
| 오산시    | 2,321,353   | 1,577,472  | 67.96  | 경기도 1위 |
| 연천군    | 470,676     | 302,947    | 64.36  | 경기도 2위 |
| 이천시    | 1,796,814   | 977,549    | 54.41  |        |
| 광주시    | 3,048,288   | 1,651,682  | 54.18  |        |

○ 2016년 분할납부 신청 납부자 : **828명 2,014백만원 수입 증대**

- 분할납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분할 납부신청자가 약속한 날짜에 분할납부 금액, 계좌번호 등의 납부 필요정보를 SMS발송 및 미납자에게 전화독려로 분할납부 약속 이행독려
- 분할 납부 약속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급여 압류, 공매 등 보류했던 체납처분 실시

기관명 : 구리시 세무과

담당자 : 민경삼(031-550-2197)

## &lt; 성과요약 &gt;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지방세 탈루 은닉 개연성을 인지하고 우수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편법적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등 고액의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추징하여, '15년 74백만원 수입증대 발생.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례 급증 현상 포착에 따른 사례연구 및 업무연찬 추진
  - 법인세무조사 업무계획 수립 및 법인 조사 등의 문제점을 파악 하던 중,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에 따라, 소득세 절세 등의 사유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 국세와 지방세간 세율 차이 및 개인기업 대 법인기업 간 장단점을 분석하여, 지방세 측면에서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포착함.

## □ 개선내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현물출자)에 대한 고액의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추징.
  - 전문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 전환 감면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과세부당성을 제기하는 법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과세논리 개발
  - 해당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시의 과세예고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냄.

## □ 개선효과

- 탈루·은닉세원 징수로 **도세징수교부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74,835천원 수입증대**

- 해당법인의 경우 OO세무서에 법인세 5억원 체납, OO시청에 지방세 5천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납부액이 없지만, 우리 시는 추정금액 중 240,338,610원을 징수하여, 교부금 등 우리 시에 74,835천원 수입증대

**※ 탈루·은닉 세원 징수액 : 240,338,610원**

- 취득세 : 182,526,610원
- 교육세 : 57,812,000원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

○ 도세징수교부금 : 182,526,610원 X 3% = 5,475,790원

○ 일반조정교부금 : 182,526,610원 X 38% = 69,360,110원

총계 : 74,835,900원

**※ 2개 법인의 취득세 완납 시 우리 시 수입증대액은 564,283천원 증기예상**

- 추정사례발생에 따른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300천원(기여자 민경삼 외 2명)**

기관명 : 연천군 세무과

담당자 : 장문창(031-839-2189)

## &lt; 성과요약 &gt;

- 고액 체납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한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파악 후 채권자대위등기를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141백만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한축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체납액 증가 문제 발생에 따른 징수대책 필요성 대두
- 특히,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의 적용을 통한 징수율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 필요

## □ 개선내용

- 체납법인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미사용승인 건축물 존재 확인(건축인·허가 서류 확인)
- 채권추심 전문직원 등과 내부검토를 통한 체납액의 징수방안 마련
  -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대위등기(보존)를 통한 압류 및 공매 진행과 더불어 제3채무자 설득을 통한 징수 병행
- 제3채무자에 대한 방문 설득과 채권자 대위등기를 통한 압류 실시
- 제3채무자의 공탁을 통한 배당으로 체납액 전액 징수

## □ 개선효과

- 체납법인의 세외수입 체납액 141백만원 전액징수(세입증대)
  - 연천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5,265백만원)의 약 2.7%차지
  - ※ 이전 취득세(지방세) 등 직·간접징수 포함시 634백만원 징수 효과

경인일보

경인일보 2016년 03월 04일 (금) 14면 인물

## 숨겨진재산 끈질긴 추적 3억8천만원 체납액 징수

### 연천군 장문창·김성귀 공무원 화제




**연천군 공무원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 채권 징수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제의인물은 군청 세무과에 근무 중인 장문창(46·세무7급)씨와 채권추심요원 김성귀(52·임기제)씨 등 2명.

이들은 지난해 6월 청산면 A기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3억8천800만원을 체납한 채 도산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체납금액이 적지 않아 이들은 이때부터 재산추적에 몰입한 끝에 이 회사 소유 열에너지 판매목적 부동산이 군(軍) 협의 부동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이자 채무자를 대신해 미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위등기 절차를 신속히 수행했다.

채권을 확보한 군은 이후 해당 부동산 매입 희망업체에 소유권 이전 협조 후 법원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21일 체납액 징수를 완료했다.

장씨와 김씨는 말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열악한 군 재정 확보에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7.0 X 16.8 cm

선경일보

선경일보 2016년 03월 03일 (목) 07면 지역

## 연천군, 열정적인 업무처리로 도산기업 체납세 징수완료

군은 체납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도산기업에 대해 세무과 장문창 주무관과 채권추심전문요원인 김성귀 주무관이 2015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끈질긴 추적으로 지방세 체납(취득세의 12건) 247백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사용료수입 14건) 141백만원 등 총 388백만원의 채권을 징수완료한 사례가 알려져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 청산면 소재 모기업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388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도산함에 따라 직원들이 재산 상태를 파악 중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군에서 채권자 대위등기를 통해 등기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이전등기가 되도록 협조와 공탁을 진행 의정부법원으로부터 388백만원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징수 완료 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판례 등을 참고해 추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인준모 기자 akopia2@empal.com 15.6 X 6.0 cm

신아일보

新亞日報 2016년 03월 03일 (목) 08면 경기

## 연천 세무공무원, 적극적 업무처리로 체납세 징수

경기도 연천군은 체납세를 징수 못할 위기에 처한 도산기업에 대해 세무과 장문창 주무관과 채권추심전문요원인 김성귀 주무관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체납(취득세의 12건) 2억4700만원, 세외수입 체납(사용료수입 14건) 1억4100만원 등 총 3억8800만원의 채권 징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의 한 기업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3억8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도산함에 따라 직원들 재산 추적을 통해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군이 채권자 대위등기로 채권을 확보한 후 이전등기를 마치고, 공탁을 진행 의정부법원으로부터 3억8800만원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 징수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판례 등을 참고해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 9.7 X 9.4 cm

## 현장사진



### 등기완료통지서

### 배당기일통지서

#### 등기완료통지서

접수번호: 14833

대리인 : 법무사 윤교현

아래의 등기신청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위자 : 연천군  
주소 :

권리자 : 유일열에너지주식회사  
(주민)등록번호 : 284311-0014597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19-13

부동산고유번호 : 2843-2015-002164  
부동산소재 : [건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94

접수일자 : 2015년 11월 2일  
접수번호 : 14833  
등기목적 : 소유권보존  
등기원인및일자 :

2015년 11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등기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차관리, 연천군청)

연천군

2015년 11월 11일 11017  
2060472-525638 ↓  
중앙민원실 제5기타집행(배당)  
2015-301-400-671



#### 의정부지방법원 채권배당기일통지서

사 전 2015타배400 배당결차  
채권자 주식회사 맘이엔티(의정부 14카단4157) 외 5  
채무자 유일열에너지 주식회사(284311-0014597)  
제3채무자 지에스플라텍 주식회사  
배당기일 2016.01.21. 14:00 12호법정

위와 같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15. 12. 10.  
법원주사 정인석

직인생략

- 주: 1. 채권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귀하기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의 원금 등으로 채권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제는 채권계산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강증명서는 발급일부 3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인강증명 2통(용도·발행처·출처), 인강도장, 주민등록증,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취임장 및 취임지의 인강증명 각 2통, 취임장은 사장의 주민등록증
  -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강증명 2통, 법인인강도장 또는 법인인강도장을 남긴한 취임장 2부, 법인등기부등본 2통, 취임장은 자의 사생활상본인이나 제직동명서, 신분증, 도장(대리인)
  - 3. 기업투자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원본과 원본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당권자관심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투자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없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4. 채권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 앞뒷면용 복사해서 2통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채권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를 기재한 서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제단에서 이저소득자가 초과 지급함에 따라 배당으로 소멸되는 채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은 채권자및채무는 배당수위에 따라서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금 유무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집행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배당이라는 배당기일 달일에 향하여 구출로만 가능합니다.
- (단 채무자는 배당기일 3월전까지 서면으로도 가능)
8. 배당비용을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소제기명정서를 집행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간외통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응답인화(AP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인화번호는 지역번호없이 1588-9100 입니다. 자동응답인화를 하신 후 곧바로 시간외통 안내를 받으려면 '1'-'9'-'월'-'일'-'연'-'번호' 0000214 2015 301 400 1\*\*를 누르시면 됩니다.

법원 소재지 :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전 화(양소) : (031)828-0462 12호법정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II. 예산절감 사례





기관명 : 경기도 건설본부

담당자 : 김혜수(031-8008-5892)

## &lt; 성과요약 &gt;

- 미납안내문 발송방법을 기존 미납건별 고지서에서 차량별 일괄 공문 발송으로 변경하여, '15년도 미납통행료 징수사업 예산액(395백만원) 대비 349백만원(88.3%)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공사 사업이 종료되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미납통행료(433백만원) 징수하게 됨
- 고액 체납자 상위 150명을 중점관리하는 징수계획을 세우고 위탁 업체에서 사용하던 수납시스템 구축
- 당시 수납시스템으로 고지서(OCR) 출력 시, 한 사람 앞에 적게는 3장에서 많게는 10장의 고지서 필요
  - 고액 체납자 상위150명은 평균 미납 95건/73만원

## □ 개선내용

- 안내문(공문) 한 장에 차량별 위반 내역을 수기로 일괄 기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

## □ 개선효과

- 미납내역 합계 문의 등 민원인 혼란 예방뿐만 아니라,
- 고지서 인쇄비용(45백만원) 및 등기우편료(291백만원) 예산 절감
  - '15년도 예산액(395백만원) 대비 349백만원(88.3%) 절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000천원(기여자 김혜수 외 2명)



## 2

# 대로구간 파쇄포장 합리적 대가기준 마련

기관명 : 수원시 감사관

담당자 : 전현진(031-228-2097)

### < 성과요약 >

-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던 아스팔트파쇄 포장의 기준단가를 대로구간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15년부터 현재까지 587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건설공사의 대가기준인 건설표준품셈에 의하면 도심지 대로구간의 파쇄포장 대가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과 마찬가지로 불연속구간으로 구분되어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대가가 책정되는 문제가 있음

### □ 개선내용

- 현장 여건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건설표준품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공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담당공무원, 시공사, 설계업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신설,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 대로구간 파쇄포장의 작업량과 장비이동을 고려한 실제 작업량인 30a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대가 신설
- 적용대가 (2015년 상반기 대가기준 적용) (단위 : 원)

| 구 분 | 20a/일   | 30a/일   | 비 고            |
|-----|---------|---------|----------------|
| 단 가 | 300,800 | 207,433 | 1a당 93,367원 절감 |

### □ 개선효과

- 2015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대로구간 파쇄포장 4,490a에 적용  $(4,490a \times 93,367\text{원}) + \text{부가세 및 제경비(약 40\%)} \approx \mathbf{587\text{백만원 절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6,000천원(기여자 전현진 외 2명)

**참고**

**신설한 대로구간 파쇄포장 대가기준을 적용한 공사현황**

| 사 업 명                   | 사업량<br>(a) | 사업비<br>(천원) | 사업부서 | 비 고 |
|-------------------------|------------|-------------|------|-----|
| 합 계                     | 4,490.9    | 3,529,362   |      |     |
| 영통고가차도 소음저감공사           | 385.0      | 43,412      | 도로과  |     |
| 매탄동 선우장미아파트 주변 소음저감공사   | 100.0      | 36,390      | 도로과  |     |
| 덕영대로 도로정비공사             | 148.0      | 194,037     | 장안구  |     |
| 창룡대로 및 경수대로 도로정비공사      | 173.0      | 264,989     | 장안구  |     |
| 경수대로도로정비공사              | 37.9       | 18,840      | 권선구  |     |
| 권선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 106.0      | 54,170      | 권선구  |     |
| 수인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 91.7       | 43,584      | 권선구  |     |
| 매송고색로 도로정비공사            | 164.9      | 83,963      | 권선구  |     |
| 매송고색로 도로정비공사            | 127.6      | 66,216      | 권선구  |     |
| 평동 구도심 도로정비공사           | 229.8      | 123,329     | 권선구  |     |
| 오목천로 도로정비공사             | 144.2      | 77,613      | 권선구  |     |
| 동수원로 도로정비공사             | 98.8       | 49,010      | 권선구  |     |
| 덕영대로(권곡사거리일원) 도로정비공사    | 176.0      | 85,621      | 권선구  |     |
| 덕영대로(세류고가차도) 도로정비공사     | 172.8      | 85,621      | 권선구  |     |
| 정조로 도로정비공사              | 226.2      | 101,829     | 권선구  |     |
| 구운사거리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 100.9      | 75,046      | 권선구  |     |
| 평동구도심 일원 도로정비공사         | 104.2      | 62,490      | 권선구  |     |
| 평동구도심 일원 도로정비공사         | 88.5       | 45,231      | 권선구  |     |
| 서부로(제1산업단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 133.5      | 67,814      | 권선구  |     |
| 서부로(제2산업단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 158.0      | 79,500      | 권선구  |     |
| 권선로 도로정비공사              | 103.2      | 58,742      | 권선구  |     |
| 중부대로 도로정비공사             | 71.4       | 106,704     | 팔달구  |     |
| 팔달문 주변 도로정비공사           | 116.2      | 179,630     | 팔달구  |     |
| 인계사거리~동수원고가차도 입구 도로정비공사 | 108.4      | 176,869     | 팔달구  |     |
| 육교사거리~고등동사거리 도로정비공사     | 53.6       | 52,277      | 팔달구  |     |
| 2016 권광로 도로정비공사         | 144.2      | 174,721     | 팔달구  |     |
| 2016 팔달로 도로정비공사         | 143.2      | 174,054     | 팔달구  |     |
| 2016 월드컵로 도로정비공사        | 116.3      | 154,254     | 팔달구  |     |
| 2016년도창룡대로도로정비공사        | 129.6      | 171,805     | 팔달구  |     |
| 2016 정조로 도로정비공사         | 91.1       | 116,903     | 팔달구  |     |
| 매산로 도로정비공사              | 102.8      | 148,404     | 팔달구  |     |
| 경수대로 도로정비공사             | 118.9      | 184,105     | 팔달구  |     |
| 매탄2동 수원 남부경찰서 주변 도로정비   | 28.0       | 15,972      | 영통구  |     |
| 매탄3동 매탄고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 84.0       | 83,519      | 영통구  |     |
| 영통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정비       | 29.0       | 19,145      | 영통구  |     |
| 원천동 원일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 84.0       | 53,553      | 영통구  |     |

기관명: 수원시 정보통신과

담당자: 진민규(031-228-3305)

## &lt; 성과요약 &gt;

- 수원시 광대역 자가망의 유희회선을 활용해 사업소 및 구청 홈페이지 민간 통신망을 시 본청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통합하여 매년 70백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공공기관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민간 상용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함.
- 수원시 본청 홈페이지망은 국가정보통신망 공동사용으로 가격이 저렴하나 사업소 및 구청은 시 본청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없어 민간 통신망 사용으로 통신료 부담 발생

## □ 개선내용

- 2007년부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통신관로를 활용한 수원시 행정업무 처리용 광대역자가망(행정망) 구축사업으로 2015년 사업소·구청 등 23개 부서를 연계하여 자가망 구축을 완료함
- 행정 자가망 구축에 따른 유희회선을 이용하면 별도의 홈페이지 자가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시 본청 국가정보 통신망을 사업소 및 구청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 착안
- 2015년 5월 박물관사업소 및 4개 구청 홈페이지 망을 민간 통신망에서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

## □ 개선효과

- 2015년 박물관사업소 및 4개 구청 홈페이지 통신요금 절감

| 구 분       | 2015 예산액 | 집 행 액    | 절 약 액    |
|-----------|----------|----------|----------|
| 홈페이지 통신요금 | 70,189천원 | 30,424천원 | 39,765천원 |

- 2016년부터는 **매년 70백만원 예산 절감효과 발생**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000천원(기여자 진민규 외 3명)

(단위:천원)

| 구 분 | 예산액    | 지출액    |       |       |       |       |       |       |       |    |    | 절약액    |
|-----|--------|--------|-------|-------|-------|-------|-------|-------|-------|----|----|--------|
|     |        | 합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합 계 | 70,189 | 30,424 | 5,739 | 5,164 | 5,068 | 5,068 | 4,669 | 3,148 | 1,412 | 88 | 71 | 39,765 |
| 박물관 | 19,560 | 4,885  | 1,519 | 935   | 848   | 848   | 735   | -     | -     | -  | -  | 14,675 |
| 장안구 | 12,738 | 6,967  | 1,062 | 1,062 | 1,062 | 1,062 | 1,062 | 1,062 | 439   | 88 | 71 | 5,771  |
| 권선구 | 11,682 | 6,815  | 974   | 974   | 974   | 974   | 974   | 974   | 974   | -  | -  | 4,868  |
| 팔달구 | 12,856 | 5,071  | 1,071 | 1,071 | 1,071 | 1,071 | 786   | -     | -     | -  | -  | 7,785  |
| 영통구 | 13,353 | 6,687  | 1,113 | 1,123 | 1,113 | 1,113 | 1,113 | 1,113 | -     | -  | -  | 6,666  |

## 4

# 세류동 중1-35호, 중1-149호선 도로개설

기관명 : 수원시 도로과

담당자 : 백진수(031-228-3424)

### < 성과요약 >

- 세류동 중1-35, 중1-149호선 도로개설구간 내 세류주거환경정비사업 구간과 중첩되는 부분의 시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LH고등사업단과 협의하여 사업비 113.4백만원을 LH에서 부담하게 하여 지출 절약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도로개설공사 구간과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구간이 중첩되어 LH 부담하에 공사시행 또는 분담금 납입을 요청하였으나 수원시 예산으로 수원시에서 공사 시행할 것으로 회신

## □ 개선내용

- 관련법 해석 자료와 3차례 이상 기관 간 회의를 거쳐 우리 시 의견 반영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료와 우리 시에서 산출한 사업비 기준으로 반영하여 결국 113.4백만원을 납부받아 재정 건전성기여

## □ 개선효과

-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실효성 제고
  - 중첩구간에 대해 LH 계약 도급사와 우리 시의 도급업체 간 간섭으로 원활한 시공이 어렵고 사업별 준공시기가 상이하여 향후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의 논란을 사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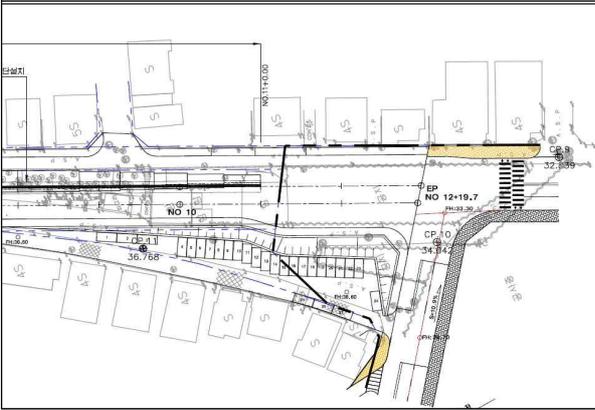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000천원(기여자 신태호 외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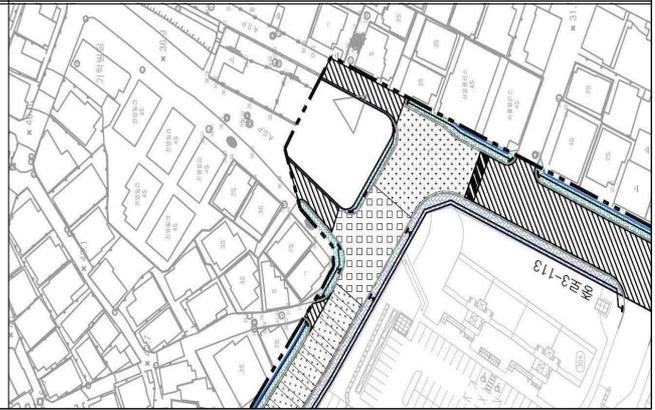
**참고**

**중첩구간 기관별 공사 계획안**

중로 1-149호선(수원시)



중로 3-113호선(LH)



## 5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비 절감

기관명 : 고양시 토지정보과

담당자 : 박주현(031-8075-3103)

### < 성과요약 >

-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좌표체계인 동경원점의 지역측지계를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 중인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측량 변환하여 '15년 1억 7천만원 예산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좌표변환 사업은 일본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측량해 구획된 지적(임야)도를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1912년 토지조사부터 지역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음
- 세계측지 좌표계는 GPS에 의하여 모든 위치가 결정되는 세계 공통 좌표계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일본의 것을 그대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지형도 등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에 한계가 있음

### □ 개선내용

- 고양시 덕양구 덕양 1지구 등 43,801필지 60,883천㎡의 지역을 좌표 변환 대상으로 선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측량 및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하여 170백만원의 예산 절감
- 市)토지정보과, 區)시민봉사과 내에 사업지원단과 추진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적기술사 및 지적기사 자격 소지자를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 직접 측량을 통해 고난이도 업무에 대한 사업 완료 추진

### □ 개선효과

- 지적도를 지형도 등 다른 공간 정보와 융·복합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 안정적 부동산거래, 상가입지정보, 재난·재해 구호 등 공간정보를 이용한 생활편익 제공

▶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70,000천원(기여자 박경모 외 8명)

## 2015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보고

「국토교통부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및 「경기도 2015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I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근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측량의 기준에서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 \* 2021.1.1.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적 사용
-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13.2.27 고시)에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반영
- ◆ 경기도 2015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계획 수립
  - \* 추진실적은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

#### 1 추진배경

- 현행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정책기반 마련 필요
- 종이도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디지털화된 지형도 등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에 한계가 있어 행정 비효율 초래
  - \* 지적·공간정보의 융·복합 시간 및 비용 측면 효율성 극대화
  - 지형과 지적, 기타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확산 및 공간정보 산업발전 도모
    - \* 국가공간정보산업 육성·발전의 저해요인 해소
-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되는 토지 37천 필지를 제외한 우리 시 전체 토지 138천 필지를 2020년까지 본 사업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좌표변환 함

## 2 추진현황

### □ 2015년 고양시 사업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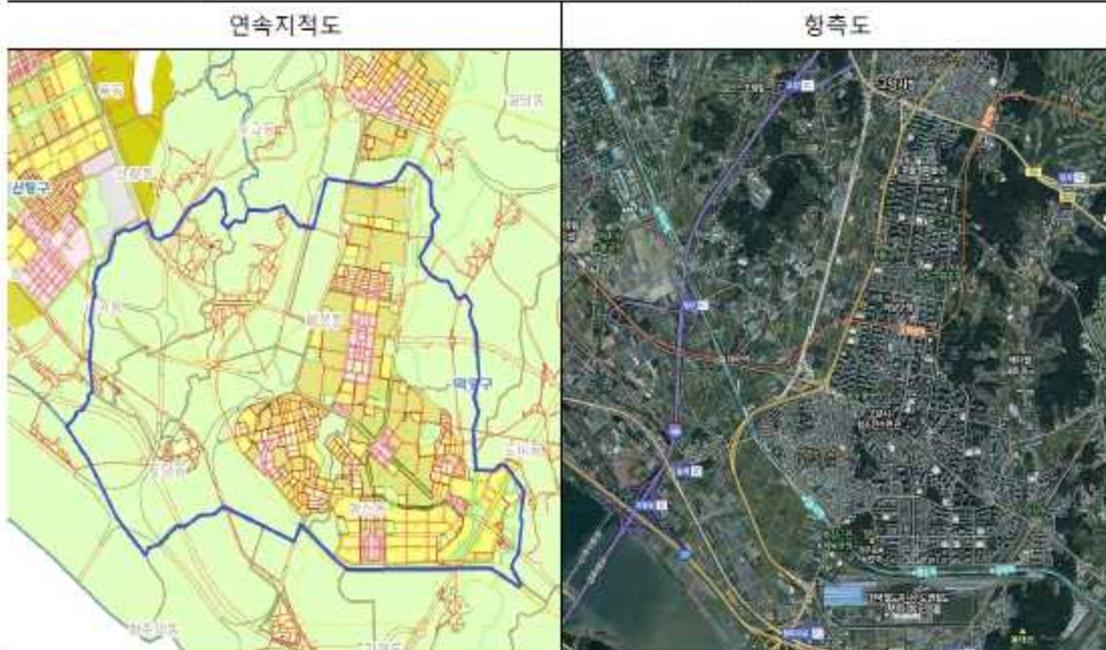
| 구 분  | 2015년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대상 |        |                 |             |  |
|------|---------------------|--------|-----------------|-------------|--|
|      | 지구명                 | 필지수    | 면적(천㎡)<br>(변환후) | 변 환<br>사업기간 | 사업비                                    |
| 고양시  |                     | 43,801 | 60,883          | 4.1~8.31    | 담당공무원 직접 측량<br>및 검사 실시<br>※약 170백만원 절감 |
| 덕양구  | 덕양<br>제1지구          | 16,191 | 16,806          | 4.1~8.31    |  |
| 일산동구 | 동구<br>제1지구          | 19,561 | 27,168          | 4.1~8.31    |  |
| 일산서구 | 구산·번곳<br>지구         | 8,049  | 16,909          | 4.1~8.31    |  |

※2014년도 사업지구 : 일산동구 정발산동 850번지 일원 (8,893필, 17,062천㎡)

### □ 2015년 고양시 사업대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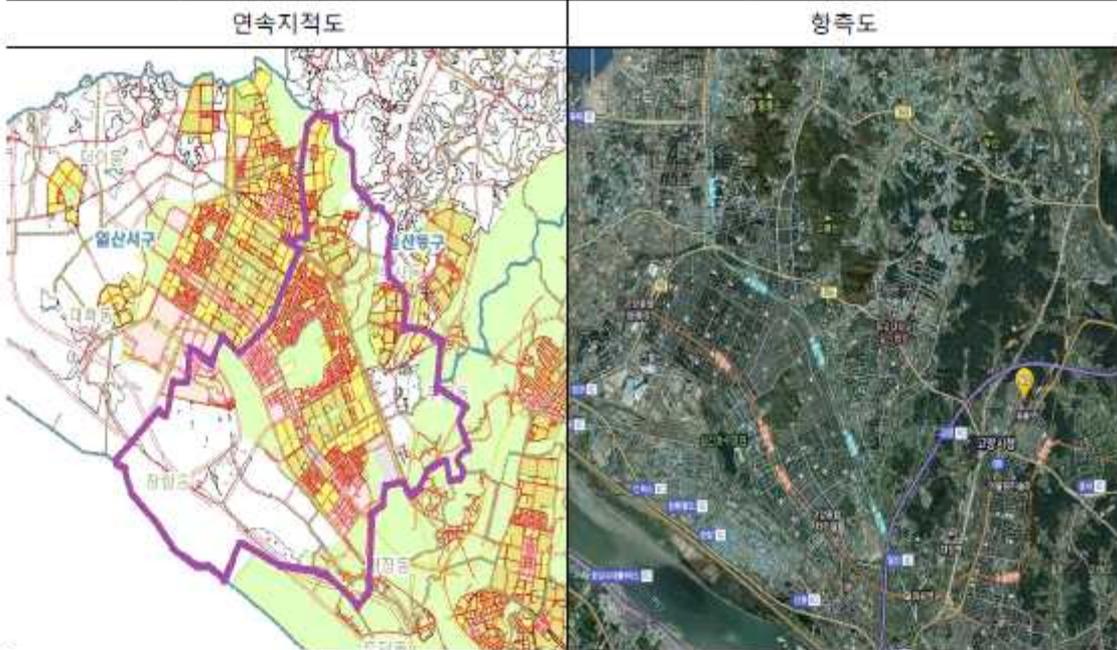
【고양시 덕양 제1지구, 덕양구 화정동·내곡동·대장동·토당동·행신동 전체】

|       |              |         |              |
|-------|--------------|---------|--------------|
| 변환담당자 | 지방시설서기 박성하   | 변환검사자   | 지방시설주사보 박경모  |
| 변환완료일 | 2015. 8. 27. | 변환완료보고일 | 2015. 8.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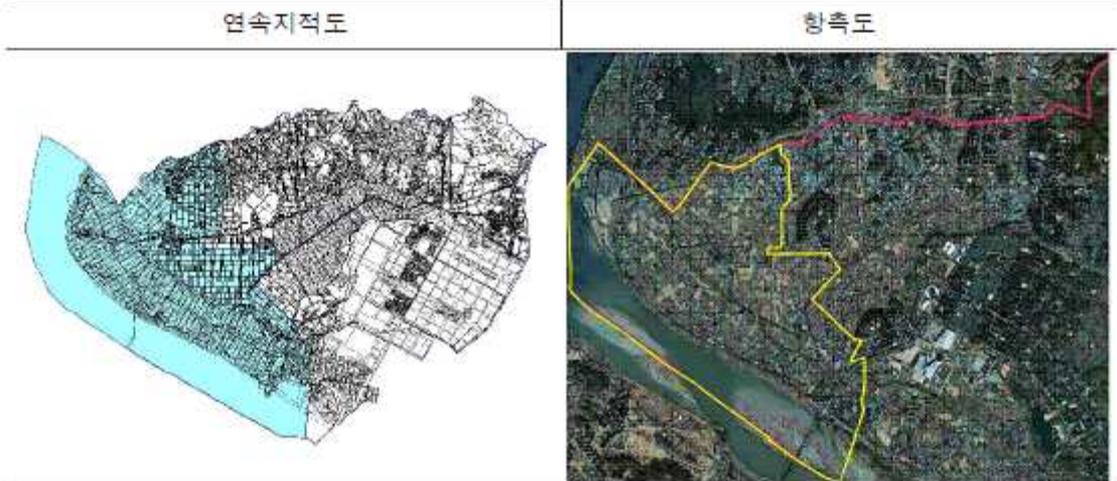
**【고양시 일산동구 제1지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번지 일원】**

|       |             |         |             |
|-------|-------------|---------|-------------|
| 변환담당자 | 지방시설주사보 조현구 | 변환검사자   | 지방시설주사보 박경모 |
| 변환완료일 | 2015.08.28. | 변환완료보고일 | 2015.08.28. |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법곶동 전체】**

|       |              |         |              |
|-------|--------------|---------|--------------|
| 변환담당자 | 지방시설주사보 이창성  | 변환검사자   | 지방시설주사보 박경모  |
| 변환완료일 | 2015년 8월 26일 | 변환완료보고일 | 2015년 8월 26일 |



### 3 세부추진 내용

#### □ 그간 추진 경과

|                |                         |                   |
|----------------|-------------------------|-------------------|
| 사업지구 결정(승인)    | 신청자 : 사업시행자, 승인자 : 고양시장 | '15. 4. 20.       |
| ↓              |                         |                   |
| 공통점 사전측량 및 선정  | 네트워크 RTK 측량             | '15. 4~6월         |
| ↓              |                         |                   |
| 공통점 측량         | GPS 정지측량, 시·군 권역별 추진    | '15. 6월           |
| ↓              |                         |                   |
| 좌표변환계수 산출      | 좌표변환프로그램에 입력·실행         | '15.7.19          |
| ↓              |                         |                   |
| 좌표변환           | 도형(개별필지)변환 실행           | '15. 8. 10        |
| ↓              |                         |                   |
| 성과검증           | 토탈스테이션 및 네트워크 RTK측량     | '15.8.17~<br>8.25 |
| ↓              |                         |                   |
| 최종성과 작성 및 결과보고 | 구청(사업시행자) ⇒ 시청 ⇒ 도청 보고  | '15.8.31          |

#### □ 측량현황

| 사전측량(공통점 선정)  | GPS 정지측량  | 현지검증측량  |
|---|---|---|
| 측량일 : '15. 4월 ~ 6월<br>측량자 : 담당주무관<br>측량장비 : 네트워크RTK 4대<br>측량대상 : 고양시 관내 지적삼각보조점 전부 및 지적도근점 등 600여 점 | 측량일 : '15. 6월 10, 11, 23<br>측량자 : 고양시 담당주무관 및 경기북부 지자체담당자 30여명<br>측량장비 : Topcon 등 GPS 16대<br>측량대상 : 선정된 공통점 100점<br>(*고양시 전역 동시 측량) | 측량자 : 담당주무관<br>측량장비 : 토탈스테이션 및 전자평판<br>측량대상 : 각 지구 50점 이상의 경계비교 검증 및 각 지구 5개 구역 이상에서 기지사혁 |

※사업비 : 시청 및 각 구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측량실시 ⇒ 약 170백만원 예산절감

#### 4 고양시 세계측지좌표 변환 결과(총평)

- 우리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안)」에 따라 고양시 전체에 대한 기본변환 후 금년도 사업지구인 “덕양제1지구”, “일산동구제1지구”, “구산법곶지구”내 공통점의 평균편차량을 가감하는 평균편차방법으로 좌표변환 실시하였음.
- 기본변환은 고양시 관내 모든 지적삼각보조정, 지적도근점 600여 점을 3개월 간 네트워크 RTK로 관측하여 이를 좌표변환프로그램에 입력·실행하였고, 오차량이 큰 점을 제거하여 모든 점의 오차가 최대 8.7cm 이내인 431점으로 최적의 기본변환 계수를 산출하였음[그림1].
- 최적 산출된 좌표변환 계수에 부합하고 고양시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지적삼각보조정 위주로 109점의 각 구청 공통점을 선정(그 중 60점은 '14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에 의한 정지측량 데이터 및 '14년도에 지적재조사지적확정측량 등으로 관측된 기존 정지측량 분 활용)하고[그림2], 우리시 3개 사업지구에 각각 16점의 사업지구 공통점과 3점의 중복세션 고정점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지측량을 실시하였음[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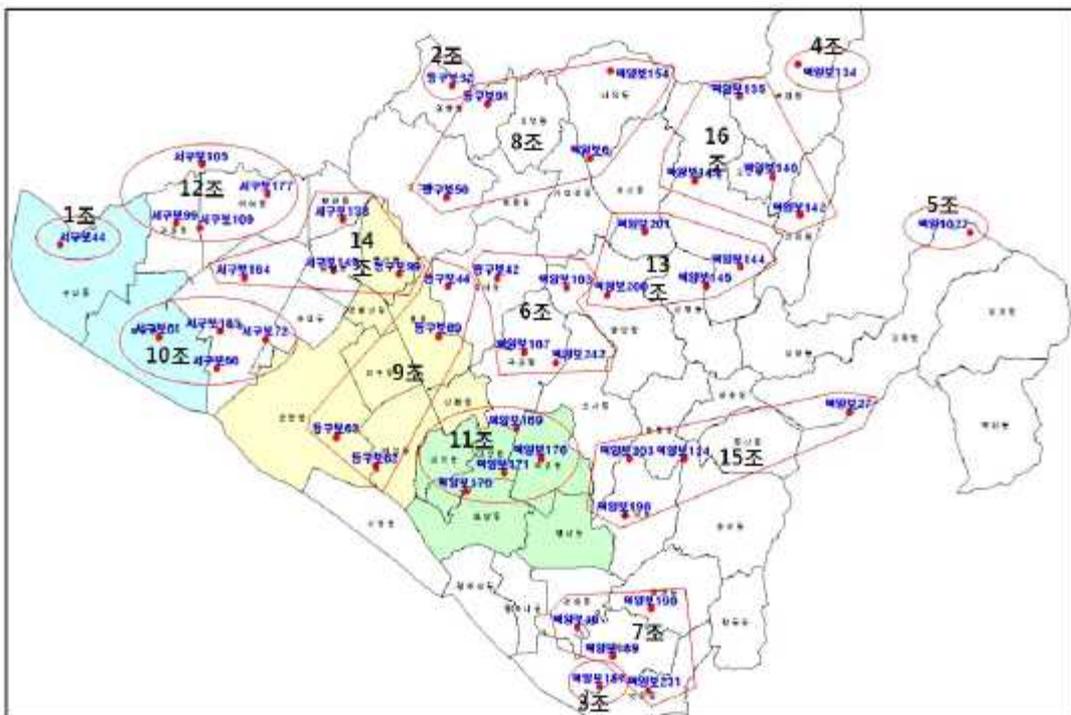
| 구 분          | 관측점수 | 비고                    |
|--------------|------|-----------------------|
| '14년도 측량 데이터 | 60   | 대부분 지적삼각보조정           |
| 각 구청 공통점     | 49   | "                     |
| 사업지구 공통점     | 51   | 지적도근점(3지구×16점+고정점 3점) |

- 정지측량 데이터를 좌표변환프로그램(LANDY1)에 입력·실행하여 모든 사업지구 내 오차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사업지구 공통점을 제거하고 이를 도형(개별필지) 변환하여 현지검증 측량한 결과 변환 전·후 경계점의 차이가 각 구별 최대 15cm, 평균 4~5cm가 발생하였음
- ⇒ 해당 사업지구의 도해지역의 경계허용오차가 36cm인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하게 좌표변환** 된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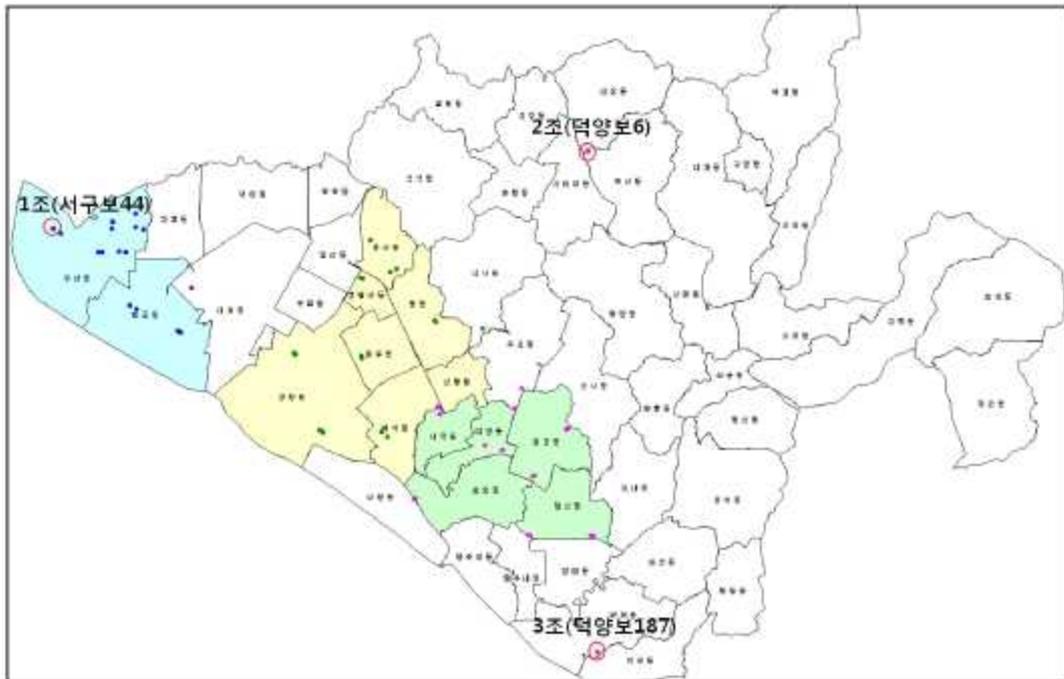
[그림1] 공통점 사전측량 현황(공통점 431점)



[그림2] 공통점 정지측량 현황(소관청 공통점 49점)



[그림3] 공통점 정지측량 현황(사업지구 공통점 각 지구별 16점)



□ 현지측량 사진



##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결과는 공간정보 및 타 정보와 융·복합되어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공간정보 산업활성화, 재난·재해 대응 등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 □ 기대효과

- 국토개발사업, 토지관련 정책입안에 지적·지형및 타 정보 융·복합 통한 의사결정지원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 토지·건물·입목도와 융합하여 토지보상 예상액 산출 등 정확한 예측이 가능
  - \* 국토계획, 도시계획, 농지, 산지, 국공유지 관리 등 모든 행정의 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 안정적 부동산거래, 상가입지정보, 재난·재해구호 등 공간정보를 이용한 생활편익 제공
  - \* 스마트폰을 이용한 토지경계 확인 등 타 공간정보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 질적 향상
-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정보와 타 정보를 연계·활용으로 타 산업(부동산, 교통, 건축 등)의 신산업 창출 기반확대
  - \* 무인자동차(공간정보+센서+GPS+과학기술), 네비게이션(GPS+공간정보) 등과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신규산업·일자리 창출가능
  - \* (융·복합사례) 지적도와 3지도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량 및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앱 서비스 개발
-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지적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및 1인 측량 실현

### □ 향후 계획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보고 : 8. 31(도청, 도시주택과,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에 좌표변환 결과 입력

기관명 : 성남시 주택과

담당자 : 김평섭(031-729-3402)

## &lt; 성과요약 &gt;

-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액 상한액 설정 및 정산검사 등 현장행정으로 '15년 1,263백만원 예산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우리 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보조금 지원사업 및 가로등과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세대수 증가 및 전기료 상승으로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고 세대별 지원금액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 대두
-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범위 및 사업량을 과다하게 신청

## □ 개선내용

- 단지별 지원금액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그간 추진실적 및 국토교통부, 경기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상한액 설정으로 지원방법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유도
- 변경된 기준(상한액 설정)으로 가로등 및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집행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실비정산 요청 민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민원대응 철저 및 성남시 아파트입주자연합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변경기준 마련 이유 및 목적 등 상세한 설명으로 주민 이해 유도
- 보조금 지원금액 절감
  - 신청단지를 방문하여 해당 공동시설의 노후상태 등을 점검·조사 후 「현장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
  - 사업범위·사업량 실측 및 우리 시 단가를 실시설계에 적용, 과다설계 방지
  - 「공사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 시 관련서류 검토 후 현장 방문, 사업량을 검측하여 이를 근거로 정산설계 하여 보조금 지급

## □ 개선효과

- 가로등(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보조금 개선
  - 2015년도 세대별 상한액(공동전기료 5,410원/세대, 가로등 440원/세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 **187,260천원의 예산절감**
-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개선
  - 2015년도 보조금 지원 심사 전 세대당 36만2천원으로 지원금액을 변경하여 **622,336천원 절감**
-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사업금액 및 지급액 절감
  - 2015년도 보조금 지원 심사 후 정산검사 등 현장행정으로 **453,082천원 절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000천원(기여자 임종섭 외 6명)

**참고**

**지급기준 개선내용**

○ 가로등(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내용

| 대 상             | 지 급 기 준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임대아파트<br>공동전기료  | ·공동전기료 산출금액 전액지원                              | ·공동전기료 산출금액 전액지원<br>※ 단, 세대수× 5,410원 범위내 지원                            |
| 가로등(보안등)<br>전기료 | ·가로등수 적용시 : 1등당 2,050원<br>·가로등 구분 청구서 적용시(전액) | ·가로등수 적용시 : 1등당 1,580원<br>·가로등 구분 청구서 적용시(전액)<br>※ 단, 세대수× 440원 범위내 지원 |

○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노후급수관 교체) 지급기준 개선내용

| 대 상       | 지 급 기 준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급수관교체 보조금 | 상한가 430천원/세대당 | 상한가 362천원/세대당 |

○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사업금액 및 지급액 개선 내용

| 구분               | 보조금 심사결정 금액 |           | 보조금 정산지급 금액 |           |
|------------------|-------------|-----------|-------------|-----------|
|                  | 단지/건수       | 총사업비      | 단지/건수       | 총사업비      |
| 심사위원회<br>심의 후 절감 | 66 / 85     | 5,632,108 | 62 / 81     | 5,179,026 |

기관명 : 안산시 예산과

담당자 : 곽영석(031-481-2807)

## &lt; 성과요약 &gt;

- 기존 운영중인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공시지가현황도 기능을 소요 비용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민간업체 시스템 사용 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연 10,000천원)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개별공시지가현황도 유지보수 예산 지출
  - 민간업체 시스템 사용에 따라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시스템 개발비의 15%를 유지보수비로 분기별 지급함(9,792천원, 2014년)
  - ※ 시스템 개발비 59,000천원, 1995년부터 약 20년간 유지관리비 약2억 지급

## □ 개선내용

-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를 총 망라한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지가현황도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구축비용 및 추가적인 유지보수비(연간 10,000천원) 등 예산절감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기존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객관성을 확보
- 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체계적 관리
  - 공간분석을 통해 지가민원 다발지역 확인 등 기초자료로 활용

## □ 개선효과

- 지속적인 예산 절감 효과(매년 10,000천원의 유지보수비 절감)
- 기존의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내에 공시지가현황도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정확·객관성을 높일 수 있음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00천원(기여자 박병호 외 3명)

기관명 : 안산시 예산과

담당자 : 곽영석(031-481-2807)

## &lt; 성과요약 &gt;

-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 확대 및 실무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개선으로 연간 73,849천원을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차원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사용 확대 및 실무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예산절감

## □ 개선내용

- 지열시스템 사용제한과 지역난방시스템 전환 등 효율적인 난방공급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여름철 비상발전기를 연계하여 냉동기 및 공조시스템 가동을 통해 시간당 270KW 절감
- 구청사 LED사업 추진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으로 시간당 5KW절감
- 전력 다소비 기기 점검 및 최적화 설정 등으로 예산절감

## □ 개선효과

-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량 30%달성으로 정부정책에 부응
-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연간 총 전기 사용량 466,064KWH절감을 통해 **73,849천원 예산절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000천원(기여자 이경래 외 3명)

기관명 : 남양주시 도로정비과

담당자 : 장준호(031-590-4372)

## &lt; 성과요약 &gt;

**늘 하던 대로? NO!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

- 노면청소차 운영 시 우수관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변 폐토사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52,857천원의 사업비 절감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기존 폐토사 처리방식의 경우 수집된 폐토사를 폐기물 운반용역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매립지에 반입
- 왕복 128km에 이르는 운반거리로 인한 운반비 및 별도 반입 수수료 등 처리비용 과다 소요

□ **개선내용**

- 처리 비용 절감 방안 모색을 통하여 폐토사 처리방식을 기존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방식에서 우리 시 소재 무기성폐기물 처리 가능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방식으로 변경

□ **개선효과**

- 운반비용 등 처리비용을 **52,857천원 절감**하였고(전년도 처리단가 대비 약 58% 절감효과) 향후 지속적 예산 절감효과 등 파급효과 큼
- 예산절감과 더불어 폐토사의 순환토사 재활용으로 환경보호에 기여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000천원(기여자 장준호 외 3명)

기관명 : 안양시 도로과

담당자 : 윤한진(031-8045-2435)

## &lt; 성과요약 &gt;

- 제방사면 등 도로확장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캔틸레버 공법 대신 대형교량 교각에 사용되는 파일벤트 공법을 응용하여 사업비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그간 제방 및 일반사면의 도로확장에는 캔틸레버 공법을 사용하여 토공 절토에 따른 가시설(토류벽+어스앵카) 설치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 본 공사는 하천제방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캔틸레버 공법으로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었음

## □ 개선내용

- 설계 발주 전 인천대교 교각설치에 사용된 파일벤트 공법을 접하게 되고 본 공사에 응용하면 가시설이 필요 없어 사업비가 많이 절감 될 것을 예상
- 설계 용역사에 파일벤트를 응용한 재설계를 협조 요청하였으나 용역사에서는 시공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함.
- 용역사 애로사항인 구조적 안전성 검토는 안양시 건설분야 자문 위원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재설계 추진

## □ 개선효과

- 재설계를 완료하자 당초 49억원이던 공사비가 29억원이 되어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 공사 추진 중 지역민원으로 사업구간이 당초 411m에서 661m로 증가되었음에도 34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15억원 사업비 절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0,000천원(기여자 이종서 외 1명)

□ 절약액 산출근거

- 사업비 : 당초 4,980백만원 ⇒ 변경 3,459백만원
- 절감액 : 1,521백만원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공법명      | 캔틸레버   | 파일벤트  |
| 횡단<br>면도 | <p>파일간격 : C=<br/>파일직경 : D=<br/>소요공기 : 10</p> | <p>파일간격 : C.1<br/>파일직경 : D=<br/>소요공기 : 6개</p> |
| 공사비      | 50억원   | 35억원  |

□ 캔틸레버 및 파일벤트 시공 사진



인천대교에 시공된 파일벤트 공법



양명교 주변 도로확장(2016년 준공)(파일벤트 공법 응용)



양명고등학교 앞 도로확장(1997년 준공)(캔틸레버 공법)

기관명 : 안양시 건축과

담당자 : 이정호(031-8045-2394)

## &lt; 성과요약 &gt;

-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 사업을 용역 없이 직접 수행하여 용역비 약 1억2천만원 예산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2015.5.18.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한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의 새로운 높이 기준이 필요하게 됨.
  - ▶ 다수인민원, 시의회 청원 : 안양6동 528번지일원 인근 지번과 동일한 높이로 완화 요구
  - ▶ 안양지역건축사회 :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수정 완화 요구

## □ 개선내용

- 개 요
  - 기 간 : 2015. 10. ~ 2016. 7.
  - 사업비 : 20,033천원
  - 내 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소요예산 148,000천원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조속한 재정비 요구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안양지역 특성에 맞도록 재정비함.
- 예산절감 내용
  - 재정비용역 예산(A) : 148,000천원
  - 도면작성용역 예산(B) : 20,033천원
  - 절감액(C)=(A)-(B) : 148,000천원 - 20,033천원 = **127,967천원**

○ 주요추진내용

- 기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보다 약 40% 상향조정
- 도로경계선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높이 별도 지정 삭제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숙박 시설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1.5m~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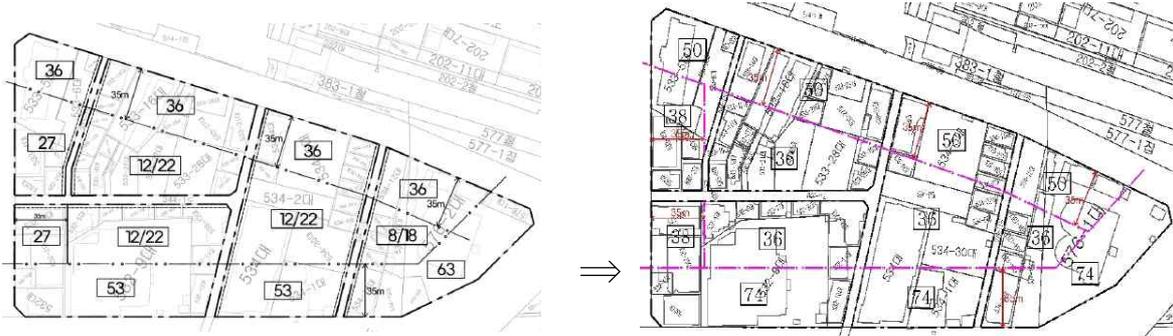
□ 개선효과

- 기존보다 약 40% 건축물 최고높이를 상향 조정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으로 일조권과 사생활침해 문제 등 사전 예방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000천원(기여자 이정호 외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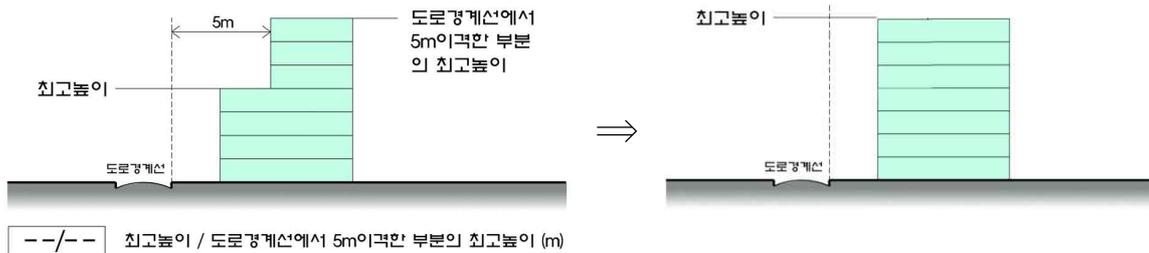
-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 주요 개정사항
  - 기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보다 약40% 상향조정



<개정 전>

<개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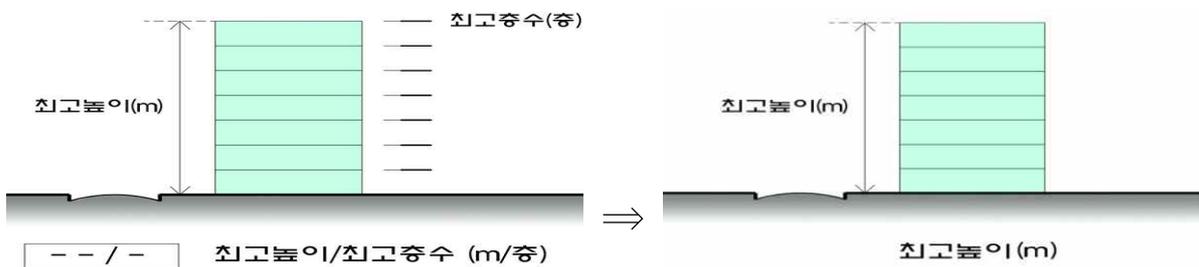
- 도로경계선에서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높이 별도 지정 삭제
  - 기단부와 고층부의 구분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방지



<개정 전>

<개정 후>

- 주거지역에서의 높이와 층수 동시 만족에서 층수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숙박 시설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  
(기존 0.5~1m → 1.5m ~ 4m로 변경 )



## □ 타 시 용역 사례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489호(나라장터 공고)
  - ▶ 사업명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 기초금액 : 금148,000,000원(부가세포함)

기관명 : 평택시 자원순환과

담당자 : 이명우(031-8024-3781)

## &lt; 성과요약 &gt;

- 설계VE 및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1년 단축) 및 예산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직접 수행이 가능함에도 책임회피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명목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주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
  - 위탁 시 설계VE 용역비(약 1~2억원 소요) 및 용역기간(약 3~6개월 소요)
  -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 추진 시 위탁수수료(약 8~9억원) 지급 및 행정절차 기간(약2년) 소요
- ⇒ 위탁 전문기관 스스로 전문성, 책임의식 및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시의 대리인으로써 자세 결여로 예산투자 대비 위탁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기간이 대폭 지연되는 문제점 발생

## □ 개선내용

- 실시설계VE 및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를 책임의식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직접 수행하여 예산절감, 사업기간 대폭 단축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비 증가 사전 차단

## □ 개선효과

- 당초 설계VE 예산액(192백만원) 대비 **78%(150백만원) 예산절감**, 직접 수행으로 3~6개월 소요되는 것을 1개월 내 완료함으로써 기간 단축
-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 직접 수행으로 당초 위탁수수료(864백만원) 대비 **30%(259백만원) 예산절감**, 전국 평균 2년 가량 소요되는 절차를 1년내 완료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물가변동비(연간 56 ~ 84억원) 절감효과**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000천원(기여자 이명우 외 2명)

**참고****실시설계VE 예산절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경제성 등 검토(VE)를 수행하게 되어 있음.
- 기본설계 경제성 등 검토(VE)의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나,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본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시에도 공무원이 적극 참여한 결과 경험이 축적되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18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관한 시행지침」 상 공무원도 직접 수행이 가능하여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는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수행
  - (자원순환과 역할) VE위원 및 전문VE업체 총괄관리, 워크숍·회의 장소 임차료 및 VE위원 검토비 등의 직접 경비 지출
  - (전문VE업체 역할) 회의진행 및 보고서 작성

| 용역비용      | 지출액      |          |          | 절감액       |
|-----------|----------|----------|----------|-----------|
|           | 계        | VE업체비    | 직접경비     |           |
| 192,203천원 | 41,684천원 | 20,221천원 | 21,463천원 | 150,518천원 |

**참고****민간투자사업 위탁수수료 30% 절감**

- 민간투자사업은 회계, 법률, 엔지니어링 등 각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산하기관이면서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지급
- 업무 위수탁 협약서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 이전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그 후 절차인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 등의 절차를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위탁수수료 중 30%에 해당하는 예산 절감
  - 업무 위수탁 협약서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 이전 위수탁 협약 해지 시 업무 위탁수수료 중 70%만 지급

| 구 분      | 100%지급시   | 70%지급     | 절감액       |
|----------|-----------|-----------|-----------|
| 업무 위탁수수료 | 864,917천원 | 605,442천원 | 259,475천원 |

기관명 : 의정부시 민자유치과

담당자 : 황주성 (031-850-5862)

## &lt; 성과요약 &gt;

- 60년 동안 방치됐던 추동공원 부지를 민간공원자본 유치를 통해 토지 보상 비용 등 132,000,000천원의 예산을 절약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1950년대 공원시설로 지정했으나 80% 이상 미개발 상태로 오는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못할 경우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 열악한 시 재정상황으로 토지보상 및 공원개발이 불가능하였음

## □ 개선내용

- 민간사업자가 전체부지의 80%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의 부지는 공동주택을 지어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 신곡·용현동 일원 86만 7804m<sup>2</sup>에 71만 2804m<sup>2</sup>의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5만 5000m<sup>2</sup>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

## □ 개선효과

-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60년 동안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 해결
- 토지보상 및 공원개발 예산 **132,000,000천원 절약**
- 지자체 주도가 아니라 민간경쟁을 통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더욱 질 높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명 : 시흥시 체육진흥과

담당자 : 최종오(031-310-3478)

## &lt; 성과요약 &gt;

- 기존 용역 방식을 탈피하여 담당부서의 직접 수행으로 경력과 지식을 통한 내실 있는 용역결과 도출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5개년 계획 1차 수립(용역방식)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이 필요
  - 용역을 통한 계획수립으로 실효성의 한계

## □ 개선내용

- 5개년 중장기 계획수립 시 단순 용역방식이 아닌 시 전반적인 현황, 개발여건, 정책흐름 등을 파악하여 직접 수행
- 시민의 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경력과 지식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용역결과 도출

## □ 개선효과

- 2016~2020년까지의 체육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써 5년간 지속적으로 우리시 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직접적으로는 금번 용역비 절감의 효과, 간접적으로는 우리시 각종 연구용역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000천원(기여자 최종오 외 4명)

기관명 : 광명시 도시재생과

담당자 : 최용호(02-2680-6950)

## &lt; 성과요약 &gt;

- 오수관로 설치공사 시 소구경추진공법을 우리 시에 처음 적용하여 공기단축, 교통정체 해소, 무소음, 무진동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사업비 5억원 예산절감 하였음.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광명동 광명사거리를 전·후로 오리로 ~ 광명로에 오수관로(D600mm)를 매설해야 하는 구간으로 우리 시 상습정체 및 교통혼잡지역으로 주간에 공사할 경우 장비이동 및 자재운반, 토사반출, 당일 포장복구 등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심한 교통소통 문제로 광명경찰서와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야간공사로 전환됨.
- 광명사거리 ~ 개봉동 방향 시공방법이 Ts판넬+Open cut 구간(L=560.0m), Sheet Pile+Open cut 구간(L=126.04m), 추진(Jacking형)구간(L=14.5m) 계획되었으나 기존 Ts판넬, Sheet Pile 시공 시 향타식 및 대형장비 등 소음 발생과 작업 공간 부족으로 야간공사 시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Sheet Pile 근입깊이가 15m이고 터파기 깊이가 7.3~5.6m로 주변 침하 발생 우려도 있었음.
- 교통정체 및 소음, 지반침하의 우려없이 도로를 개착시공을 하지 않고 지하로 관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처음으로 소구경추진공법(Semi-Shield) 및 사일런트 파일러를 적용하여 안전하게 시공

## □ 개선내용

○ 공법변경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 **492,007천원 절감**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 시 공 방 법 | <b>Sheet Pile + Open cut</b><br>- Sheet Pile(400×150×3)<br>h=15.0m(토사천공포함)<br>- 터파기 h=7.3~5.6m | <b>소구경추진공법</b><br>- 본관(D600mm) 추진<br>- 추진구1개소, 도달구1개소 |                 |
| 사 업 량   | TS판넬+Open Cut L=358.8m<br>Sheet Pile+Open Cut L=126.0m<br>추진(Jacking형)구간 L=14.5m               | 소구경추진(Semi-Shield형)구간<br>L=499.3m                     |                 |
| 공 사 비   | 3,358,373천원<br>(7,923천원/m당)  | 2,866,366천원<br>(2,455천원/m당)                           | 492,007천원<br>절감 |

## □ 개선효과

○ 오수관로 매설공사를 상습정체구간에서 교통정체 없이 무진동, 무소음 시공방식인 소구경추진공법으로 변경 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 최소화뿐만 아니라 공기단축 및 사업비 지출 예산절감에 기여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500천원(기여자 최용호 외 2명)

○ 현장사진



기관명 : 양주시 환경관리과

담당자 : 이철승(031-8082-6312)

### < 성과요약 >

-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1단계) 준공에 따른 업무 추진지침 상 5년간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유사용역에 계약변경을 추진하여 연간 113,550천원(총 567,750천원) 예산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기 수행용역(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에 과업(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단계 모니터링용역)추가로 계약변경 추진 중 특혜소지가 있다는 감사부서 의견에 따라 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

### □ 개선내용

-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공간적 범위가 일치하고 과업내용의 중복도가 높으므로 변경계약 가능)에 따라 계약변경
  - 동일 공간에서 이뤄지는 유사용역으로 별도 추진 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을 수차례 설명

### □ 개선효과

- **연간 113,550천원(총 567,750천원) 절감**[참고 1]
- 감사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행정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었으며, 향후 유사업무 추진 시 업무부담 완화

## 참고 1 용역비 비교표

(단위:원)

| 구분                      | 별도 발주시      | 설계 변경시     | 차액          | 비고   |
|-------------------------|-------------|------------|-------------|------|
| 1.직접인건비                 | 53,827,625  | 22,876,557 | 30,951,068  |      |
| 가. 작업계획수립               | 495,143     | 0          | 495,143     | 중복   |
| 나. 모니터링준비               | 911,661     | 0          | 911,661     | 중복   |
| 다. 물리적 하천특성 및 수리특성 모니터링 | 15,472,677  | 13,756,683 | 1,715,994   | 일부중복 |
| 라. 화학적 특성 모니터링          | 3,943,323   | 0          | 3,943,323   | 중복   |
| 마. 생물학적 모니터링            | 6,851,981   | 0          | 6,851,981   | 중복   |
| 바. 경관 및 인문사회특성 모니터링     | 4,376,127   | 4,376,127  | 0           |      |
| 사. 모니터링 평가              | 3,261,044   | 0          | 3,261,044   | 중복   |
| 아. 사업의 종합평가             | 12,311,052  | 0          | 12,311,052  | 중복   |
| 자. 효과분석 및 건의            | 4,743,747   | 4,743,747  | 0           |      |
| 차. 보고서 작성               | 1,460,870   | 0          | 1,460,870   | 중복   |
| 2.직접경비                  | 4,406,300   | 3,440,700  | 965,600     |      |
| 가. 환경질분석비 (수질시험비)       | 1,236,000   | 270,400    | 965,600     | 일부중복 |
| 나. 인쇄비                  | 3,170,300   | 3,170,300  | 0           |      |
| 3. 제경비                  | 59,210,388  | 8,006,795  | 51,203,593  |      |
| 4. 기술료                  | 22,607,578  | 2,500,494  | 20,107,084  |      |
| 5. 부가가치세                | 14,005,189  | 3,682,454  | 10,322,735  |      |
| 총 계                     | 154,057,079 | 40,507,000 | 113,550,079 |      |

주) 중복은 기수행중인 과업(사후환경영향조사 1단계 부분)과 모니터링용역의 과업내용이 중복된 부분임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의견서 번호 : 15-152)

|          |                                      |      |                           |
|----------|--------------------------------------|------|---------------------------|
|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 작성 자 | 직급 : 지방행정6급<br>성명 : 이 영 우 |
| 건 명      |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용역 설계변경 가능여부 |      |                           |

## 1. 사업 개요(추진상황 등)

○ 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 1단계   | 2단계                               |
|------------------------|---|-----------------------------------|
| 사업기간                   | '09. 1월 ~ '15. 6월   | '14. 5월 ~ '19. 3월                 |
| 사업위치                   | 광적면 가남리 신단교<br>~ 남면 상수리 운암잠수교   | 남면 상수리 운암잠수교<br>~ 은현면 하패리 동두천시 경계 |
| 사업규모                   | 8.12km  | 12km                              |
| 사 업 비                  | 252억원   | 310억원                             |
| 사후환경영향조사<br>(공사시, 운영시) | ·용역계약('14. 6월)  | ·용역계약('14. 6월)                    |
| 모니터링<br>(사전, 사후)       | ·용역계약 없음*   | ·용역계약('14. 6월)                    |
| 용역금액                   | ·총867,691천원 (2014. 6. 25. ~ 2024. 5. 2.)<br>- 2014년 107,690천원, 2015년 131,000천원<br>-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1,2단계), 모니터링(2단계) |                                   |

\* '06. 12월 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부 지침에 모니터링 관련 사항이 없었으나 '08. 4월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1단계 사업 준공 후 모니터링 실시 필요

- '06. 12. : 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07. 4. ~ '08. 5. : 1단계 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08. 4.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 개정(주요 개정사항 : 모니터링 실시)
- '09. 1. : 1단계 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착공
- '11. 5. ~ '13. 10. : 2단계 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14. 5. : 2단계 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착공
- '14. 6. : 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
- '15. 6. : 1단계 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준공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1단계)가 착공된 후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이 개정되면서 실시해야 하는 모니터링용역을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2단계)에서 하고 있는 사후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과업내역에 추가하여 설계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함.

## 3. 검토의견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 1.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게 추가업무를 지시하고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 1단계 사후 모니터링 과업은 기존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과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고 과업내용의 중복도가 높으므로,
  - 귀시는 위 집행기준에 따라 1단계 사후 모니터링 과업을 기존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에 추가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기관명 : 안성시 민자사업개선추진단

담당자: 김정현 (031-678-5872)

## &lt; 성과요약 &gt;

-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되면서 향후 18년간 이자와 운영비 1,248억원의 절감효과 및 협상과정에서 해지금 96억원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안성시, 하수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sup>1)</sup> 추진 그리고 그 이후

- 안성시 하수도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1,750억원으로 **민간투자비 450억원(25%)이 투입된 안성시 이래 최대 규모사업**이다. 2004년 사업자 민간투자사업 제안 당시 안성시는 **하수보급률을 비롯하여 재정자립도 및 국도비 지원이 최하위 지역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환경**이었다. 따라서 2008년 민자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맞이하였다.
- **민자사업 준공 결과** 하수도보급률은 39.6%에서 78.1%까지 상승하였고, 노후화 시설교체 등으로 수질개선과 시민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 도시발전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 하지만, 민자사업 준공 이후 보장된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안성시가 사업자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2,700억원(연간 135억원, 재정사업대비 2배)**에 달했고, 또한, 하수원가 대비 낮은 하수요금 정책으로 심각한 재정 적자에 부딪혀 [표1]과 같이 **안성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요금 인상 계획(안)을 내놓았다.**

[표1] 안성시 하수도요금 인상 추진

| 구 분                      | 2014년(기준) | 2015년(현행) | 2016년(예정) | 2017년(예정) | 2018년(예정) |
|--------------------------|-----------|-----------|-----------|-----------|-----------|
| 하수요금단가(m <sup>3</sup> 당) | 284원      | 660원      | 792원      | 950원      | 1,140원    |

※ 2014년 기준 하수요금 : 전국평균 하수요금 386원, 경기도내 평균 하수요금 320원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e)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안성시 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 기간은 20년이다.

- 이로인해, **20만 시민들은** 안성시가 하수요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고 높게 인상하였다며, 그 이유가 “돈먹는 하마인 민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시민, 시의회, 사회단체, 언론이 지속적인 불만의 목소리<sup>2)</sup>를 내며 안성시 최대 행정 불신**으로 이어졌다.

## □ 개선내용

### (1) 안성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무엇이 문제인가 [수익구조 분석]

- 안성시 민자사업 개선을 위한 조직 신설
  - 안성시는 2015. 1월 시장 특별지시로 **부시장 직속 민자사업 개선을 위한 부서를 신설<sup>3)</sup>**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에 착수**하였다.
- 안성시 민자사업 수익구조(재무구조) 분석
  - 민자사업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자사업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에게 20년간 보장된 수익은 2,700억원에 달해 **재정사업<sup>4)</sup>과 비교하여 약1,150억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sup>5)</sup>**”하였다.
  - 안성시 민자사업 경제성 분석결과 “450억원이 투입된 민간투자비는 은행대출<sup>6)</sup>과 실제 사업자투자금<sup>7)</sup>으로 이뤄져 있어, 은행대출 연간 이자율은 고정8.3%, 사업자투자금 이윤은 무려 22%내외로 안성시가 20년간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 안성시 목표를 정하다
  - 안성시는 민자사업 재정부담 해소와 합리적인 적정 하수요금을 마련을 위하여 일부 개선만으로 해결이 불가하고 “**대대적 개선 또는 중도해지를 통한 재정절감 목표**”를 정하기에 이른다.

2) 시의회 반대집회 및 시정비판, 시민 1인시위 및 공익처분 요구, 시민 서명운동 전개, 사업 정보공개청구 소송, 지역언론 민자사업 비판 언론으로 변질 등

3) 전국 최초 민자사업 개선만을 위한 감사조직 신설(구성 : 공무원(5), 변호사(1), 회계법인(2), 법무법인(1))

4) 재정사업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경제성 분석용역 결과(2015. 5월 ○○전문회계법인)

6) 은행대출(타인자본) :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본 가운데 은행 및 금융권을 통하여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말함.

7) 실제 사업자투자금(자기자본) : 타인자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자본에서 부채를 뺀 것으로 주주(출자자)들의 투자재원과 이윤을 합한 배당금을 말함.

## (2) 안성시, 민자사업 개선 노력과 재정절감 목표를 향한 협상 과정

- 안성시 민자사업 전반 불합리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요구
  - 안성시 민자사업 「재무·운영·공사부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개선사항 ‘법인세 삭감 등’ 17건을 도출하여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요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표2] 안성시 민간투자사업(BTO) 전반 진단 일정

| 추진일정                     | 안성시 BTO사업 전면 재검토 과정   |                        |                              |
|--------------------------|---|------------------------|------------------------------|
| ‘15. 1월초부터               | 안성시장 특별지시 ⇨ TF팀 구성-자체점검 및 감사착수<br>민자사업개선추진단 신설 - 사업자측과 협상 및 공방 진행 |                        |                              |
| ‘15. 1월 부터<br>‘16. 6월 까지 | 하수도 BTO사업 “재정·운영·공사분야” 전반 문제제기<br>⇨ 불합리 개선사항 17건 지속적인 개선명령 및 개선요구 |                        |                              |
|                          | 재무(회계)부문  | 시설운영 부문                | 공사시공 부문                      |
|                          | 조달금리 이자율<br>과다적용 등 7건   | 대수선비 과다책정<br>감액요구 등 8건 | 시공 전수조사를 통해<br>27억원 공사비 감액요구 |
| ‘15. 4월부터~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하수발전협의회(1차~5차 진행)<br>(사업자 일부수용 : 법인세 등 3건 109억원 삭감) |                        |                              |

- 사업자, 안성시 요구 일부수용 했지만, 해법이 될 수 없다
  - 사업자는 市 요구사항 일부 “법인세 이중부담 문제 등(109억원)과 자금 재조달<sup>8)</sup>을 통한 조달금리 인하”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요구사항 수용만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불만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었다.
- 안성시 사업자와의 상생을 전제로 유례없는 합의해지 제안
  - 안성시는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민자사업 유례 없는 합의해지 제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2015. 11월 사업자가 합의해지 제안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 민자사업 합의해지 협상을 통해 해지금 96억원 낮춰

8) 자금재조달이란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함(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연구')

- 합의해지 협상은 2015. 12월부터 2016. 6월까지 7개월에 걸쳐 본협상 9차, 실무협상 3차, 주주협상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협상에서 사업자는 18년간 미래기대이익분<sup>9)</sup>을 반영한 해지금 506억원을 제시하였으나, 7개월의 협상 끝에 88억원 낮은 418억원<sup>10)</sup>으로 실제 투입된 민간투자비보다 낮은 금액에 최종 해지금 결정과 2016. 6. 21일 해지협약을 체결하였다(부가세를 포함한 해지금 절감액은 96억원에 달함).

[그림1] 안성시 민자사업 최종해지협약 관련 언론기사



### (3) 시민과 함께 국가정책에 부합한 안성시 하수요금 조정(안) 마련

- 안성시는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18년간 1,24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며, 전국 최고 높은 하수요금 조정을 위하여 「하수사용료 시민조정위원회」**를 구성<sup>11)</sup>하고, 6차

9) 미래기대이익분 : 협약서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중도해지되는 경우 잔여 운영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분과 민간투자비를 합하여 해지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10)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지방채 발행승인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고정금리 2.06% 차입 해지금 지급”

회의와 2차 시민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시민참여·소통·이해를 전제로 일방행정이 아닌 협치행정·투명행정·신뢰행정의 장**이 되었다.  
 [그림2] 안성시 하수요금조정(안)을 위한 시민조정위원회 운영과정



- 이번 시민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전국에서 최고 높은 안성시 하수요금을 경기도내 도농복합시 평균수준의 하수요금으로 인하하되 정부정책의 공공요금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요자부담 원칙에 따라 “자산비용을 제외한 실제 영업비용만을 산정<sup>12)</sup>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인상(안)을 마련**하였다.

[표3] 안성시 5개년 하수사용료 조정(안)

| 년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톤당단가(원) | 220  | 660  | 660  | 481  | 553  | 625  | 697  | 769  | 841  |

※ 481원 기준은 도내 도농복합시 평균하수요금, 841원은 하수원가 중 하수운영비에 해당

## □ 개선효과

### (1) 순간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 민자사업 개선진단 초기 사업자의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나, **하수 발전협의체<sup>13)</sup>를 구성**하고, **市개선 요구사항(불합리 개선사항 17건)에**

11) 하수사용료 시민조정위원 구성 : 15명 [시민(5명), 시의원(3), 대학교수(2), 회계사(2), 공무원(3)]

12) 하수요금은 공공재 성격이면서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산성 시설투자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하수요금으로 책정하여 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립(하수공공요금 정책의 현실화를 감안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대한 대대적인 개선요구와 공론화를 통하여 사업자와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였다.

- 민자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시 회사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안성시가 모든 회계 및 관계자료 확보**하였고, 불합리한 개선 요구사항을 다수 도출하였다.
- 해지협상 초기 사업자측이 제시한 해지금 506억원에 달했으나, **사업자가 산정한 해지금의 오류를 찾아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다.**
- 협상 막바지에 **주주들<sup>14)</sup>의 반대에 부딪혀 해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2개월에 걸쳐 지속적이고 끈질긴 설득으로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 해지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만, 하수원가 대비 **공공요금현실화를 고려하면 순차적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하수요금 **시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소통·공감·협치행정**으로 **5개년 하수요금 인상(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의 하수요금 폭등에 대한 불만을 잠식시켰다.

## (6) 민자사업 합의해지를 통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시 재정절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1,344억원)

- 안성시가 민자사업을 유지했다면 남은 운영기간(18년) 동안 사업자에게 2,712억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사업해지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되면서 **향후 18년간 이자와 운영비 1,248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또한 협상과정에서 해지금 96억원을 낮췄다.**

□ 국가 공공요금 정책에 부합하는 안성시 하수요금 조정

- 대한민국 하수원가의 현실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하수요금 현실화(총괄원가<sup>15)</sup>)와 수요자 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안성시 하수요금 5개년 조정안을 재정립<sup>16)</sup>”**하여 **하수요금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13) 안성시하수발전협의회 : 사업자와 안성시 공무원, 안성시시의원,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성시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요구 창구 역할을 함.

14) 법인주주들 : 본 민간투자사업은 대기업 4개사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자금출자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기업 주주의 결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됨.

15) 총괄원가 : 전체 시설비투자액과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 전체(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원가가 높음)

16) 총괄원가 산정 = 영업비용 + 자본비용 + 영업외비용 - (기타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안성시 하수요금 원가산정 = 시설투자비 자본비용을 제외한 영업비용으로 하수요금 원가 산정

기관명 : 구리시 하수과

담당자 : 조홍성(031-550-2478)

## &lt; 성과요약 &gt;

- 하수처리시설의 생물반응조 공정 및 내부반송 펌프 운전방법을 개선하여 약품처리비용을 절감하였음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구리하수처리장은 하수에 존재하는 총인을 제거하기 위해 약품(무기응집제)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유입BOD와 질소비율(C/N비)이 낮을 경우 메탄올을 사용하여야 함.
- 이로 인해 무기응집제 및 메탄올 사용량이 증가하여 하수처리장 운영비 증가와 공기업평가에 감점요인이 발생

## □ 개선내용

-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를 화학적 처리방법에서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50%변경하여 무기응집제 사용량을 감소시킴
- 하수처리장 내부반송펌프 운전방법을 개선하여 우기 및 동절기에 메탄올을 미사용하여 약품사용량을 절감

## □ 개선효과

- 지출절약액 산출내역

| 약품명       | '14년<br>약품사용량 | '15년<br>약품사용량 | 약품 절감량    | 절감액                  |
|-----------|---------------|---------------|-----------|----------------------|
| 계         |               |               |           | 46,423천원             |
| 무기<br>응집제 | 1,091,650kg   | 897,250kg     | 194,400kg | 194,400×105=20,412천원 |
| 메탄올       | 163,860kg     | 32,488kg      | 131,372kg | 131,372×198=26,011천원 |

※ 무기응집제 단가: 117원/kg('15년), 105원/kg('16년)

※ 메탄올 단가: 198원/kg('15년)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170천원(기여자 조홍성 외 2명)

인쇄 : 조홍성 / 하수과 (2016-03-04 19:03:59)

|         |              |
|---------|--------------|
| 생산등록번호  | 하수과-14761    |
| 등 록 일   | 2015. 10. 16 |
| 결 재 일   | 2015. 10. 16 |
| 공 개 구 분 |              |

|             |        |                  |
|-------------|--------|------------------|
| 주무관         | 하수처리팀장 | 하수과장             |
|             |        | 전결 2015. 10. 16. |
| 조홍성         | 이진선    | 김병기              |
| 협<br>조<br>자 |        |                  |

## 제2하수처리시설 공정 개선 보고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 생물반응조를 개선하여 구리하수처리장의 최적 운전인자를 도출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활용하여 약품사용량을 최소화

### ■ 개선결과

- 개선사항별 총인(T-P) 처리농도

(단위: mg/L)

| 구 분     | A <sup>2</sup> O계열 | MLE계열   | 2차 침전지 분배조 |
|---------|--------------------|---------|------------|
| 1차 개선사항 | 12.6→2.9           | 5.1→1.6 | 1.6        |
| 2차 개선사항 | 11.5→3.5           | 4.8→0.8 | 1.4        |
| 3차 개선사항 | 15.0→0.9           | 5.4→0.1 | 0.4        |

- 무기응집제(PAC) 예상 감소량

| 약품 투입량(톤)          |                    |              | 소요예산(백만원)          |                    |              |
|--------------------|--------------------|--------------|--------------------|--------------------|--------------|
| 개선전<br>('15.1.~6.) | 개선후<br>('15.7.~9.) | 연간<br>예상 사용량 | 개선전<br>('15.1.~6.) | 개선후<br>('15.7.~9.) | 연간<br>예상 절감액 |
| 567                | 110                | 440          | 66                 | 12                 | 84           |

### ■ 향후계획

- 메탄올 투입배관 개선 및 예산성과금 신청예정

##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 제2하수처리시설 공정 개선 보고

- 안정적으로 수처리를 하고자 생물반응조를 개선하여 구리하수 처리장의 최적 운전인자를 도출
-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활용하여 약품사용량을 최소화

### I 생물반응조 현황

| 구분   | 형식    | 규격(m)             | 지수  | 체류시간   |
|------|-------|-------------------|-----|--------|
| 무산소조 | 구형RC조 | W12.2×L20.5×He4.6 | 8지  | 1.99hr |
| 호기조  | 구형RC조 | W27.8×L20.5×He4.6 | 24지 | 5.9hr  |
|      |       | W8.1×L20.5×He5    | 8지  |        |

- A<sub>2</sub>O: 혐기조(Anaerobic)→무산소(Anoxic)→호기조(Oxidation)
- MLE: 무산소(Anoxic)→호기조(Oxidation)
- ※ 혐기조: 산소가 없는 상태, 무산소조: 질산성질소가 존재하는 상태, 호기조: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

### II 추진사항 및 개선결과

- 생물반응조에 혐기조 조건을 조성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총인(T-P) 처리공정을 도입

| 구분    | 개선사항                            | 생물반응조 운영사항 | 총인 농도(mg/L)   |
|-------|---------------------------------|------------|---|
| 1차 개선 | A <sub>2</sub> O 1계열<br>MLE 7계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ub>2</sub>O계열 12.6(혐)→2.9(호4)</li> <li>· MLE계열 5.1(무)→1.6(호4)</li> <li>· 2차 침전지 분배조: 1.6</li> </ul> |

|       |                                 |  |  |
|-------|---------------------------------|--|--|
| 2차 개선 | A <sup>2</sup> O 2계열<br>MLE 6계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up>2</sup>O계열 11.5(협)→3.5(호4)</li> <li>· MLE계열 4.8(무)→0.8(호4)</li> <li>· 2차 침전지 분배조 1.4</li> </ul> |
| 3차 개선 | A <sup>2</sup> O 4계열<br>MLE 4계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up>2</sup>O계열 15.0(협)→0.9(호4)</li> <li>· MLE계열 5.4(무)→0.1(호4)</li> <li>· 2차 침전지 분배조 0.4</li> </ul> |

○ 무기응집제(PAC) 예상 감소량

| 약품 투입량(톤)          |                    |             | 소요 예산(백만원)         |                    |             |
|--------------------|--------------------|-------------|--------------------|--------------------|-------------|
| 개선전<br>('15.1.~6.) | 개선후<br>('15.7.~9.) | 연간<br>예상사용량 | 개선전<br>('15.1.~6.) | 개선후<br>('15.7.~9.) | 연간<br>예상절감액 |
| 567                | 110                | 440         | 66<br>(132/년)      | 12<br>(48/년)       | 84          |

### III 향후 계획

- 탈질효율 향상을 위한 메탄올 투입배관 추가 설치
  - 유기물 부족에 따른 탈질효율 저하를 대비하여 개선한 A<sup>2</sup>O 계열의 무산소조에 메탄올을 투입할 수 있는 배관 추가 설치
- 약품 투입량 감소 실적에 따른 예산성과금 신청 예정

# 하수처리효율 증대 및 약품사용량 저감을 위한 생물반응조 운전 개선사항 보고

생물반응조 내부반송율을 증가시켜 탈질 미생물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질소제거효율을 향상시켜 외부탄소원(메탄올) 투입하지 않고 질소와 인을 효과적으로 처리한 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 I 현황

### ○ 시설현황

| 구분     | 형태    | 규격                                      | 지(대)수 |
|--------|-------|---|-------|
| 생물반응조  | 구형RC조 | W40m×L20.5m×He4.6m<br>W8.1m×L20.5m×He5m | 8지    |
| 내부반송펌프 | 수중펌프  | 22kw(29마력)                              | 8대    |

### ○ 오염물질(질소·인) 미생물 제거원리

| 오염물질    | 혐기조                             | 무산소조                                      | 호기조   |
|---------|---------------------------------|---|---|
| 질소(T-N) | NH <sub>3</sub> +유기질소<br>형태로 존재 | NO <sub>3</sub> →N <sub>2</sub> 가스로<br>탈질 | NH <sub>3</sub> →NO <sub>2</sub> →NO <sub>3</sub> 로<br>전환후 무산소조로 이송 |
| 인(T-P)  | 인방출<br>(유기인→무기인)                | 무기인 상태로<br>존재                             | 미생물에 의한<br>무기인 흡수 및 제거  |

※ 탄소원이 부족할 경우 무산소조에서 탈질이 혐기조에서 인방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

## II 개선사항

- 내부반송펌프 반송량을 증가시켜(150→200%) 질소제거 중 탈질효율을 극대화하여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운영
- 생물반응조 50%를 무산소조→혐기조로 변경하여 인방출 향상 유도하여 메탄올 미사용하여 운영

○ 메탄올 사용내역

(단위: kg)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 고                             |
|---------|--------|-------|---------------------------------|
| 163,860 | 32,488 | 미사용   | 2015년 3월부터 개선하여<br>현재까지 메탄올 미사용 |

○ 내부반송펌프 및 메탄올 저장탱크 사진

|   |  |
|---|--|
|   |   |
| <p>내부반송펌프 운전 패널</p>   | <p>메탄올 저장탱크</p>  |
|  |  |
| <p>생물반응조 무산소(혐기조)</p>   | <p>호기조</p>   |

기관명 : 포천시 기술보급과

담당자 : 이동선(031-538-3816)

## &lt; 성과요약 &gt;

- 경기도체전 화단조성용 초화류를 구입하는 대신, 묘를 구입하여 직접 육묘하고 개화시켜 시비 96백만원을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2015년 전국체전(강원 강릉시) 장소 사전 조사
  - 화단조성이 미미하여 일부 경기장이 흉물스러웠음.
  - 경기 시설관계자 면담 결과, 비싼 초화류 가격과 제한된 사업비로 많은 화단을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 □ 개선내용

- 도 체전시기인 봄꽃을 직접 육묘하여 화단을 조성기로 결정
- 관련예산 확보(2016년) : 25백만원
- 봄꽃 육묘 및 공급(2016. 1. ~ 3.) : 제라늄 등 8종 64,500주

## □ 개선효과

- 꽃묘 구입, 육묘 및 개화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
  - 예산절감 : 122백만원(구입가격) - 25백만원(자재비) = **97백만원**
- 꽃 구입시 가격 (1주당 / 2016년 4월 기준 / 소매가)

(단위:원)

| 제라늄   | 꽃양귀비  | 마가렛   | 페츄니아  | 금잔화   | 데모르   | 데이지   | 팬 지 |
|-------|-------|-------|-------|-------|-------|-------|-----|
| 3,000 | 2,000 | 2,500 | 1,000 | 1,200 | 3,000 | 1,500 | 570 |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000천원(기여자 이동선 외 2명)

○ 꽃묘 육묘장면



○ 봄꽃 개화장면



지역 08면

## 포천시 농기센터, 도체육대회 손님맞이 만전 주요 경기장 화단조성용 꽃 직접 재배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포천시(시장 서장원)에서 개최되는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앞두고 포천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에서는 선수들의 경기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경기장에 조성될 화단에 식재할 봄꽃을 육묘 중이다.

화종은 데이지, 페츰니아, 금잔화 등 4월 하순에 개화하는 7종의 봄꽃으로 총 6만 여본을 육묘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식재는 4월 중순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은 비용을 들여 보다 많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꽃을 직접 육묘하게 됐고, 역대 대회가 개최됐던 타시·군과 차별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포천시를 방문하게 될 대회 관계자와 선수들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포천/김진욱 기자  
kim7445@naewoeilbo.com

(120\*15.0)cm

기관명 : 양평군 행복돌봄과

담당자 : 김애란(031-770-2143)

## &lt; 성과요약 &gt;

- 복지·보건서비스 지역 접근성 한계극복을 위해 마련한 사회적 약자배려, 맞춤형 복지사업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사업진행에 있어 농촌재능 나눔사업 공모사업 선정(3년 연속사업비)으로 예산절감 효과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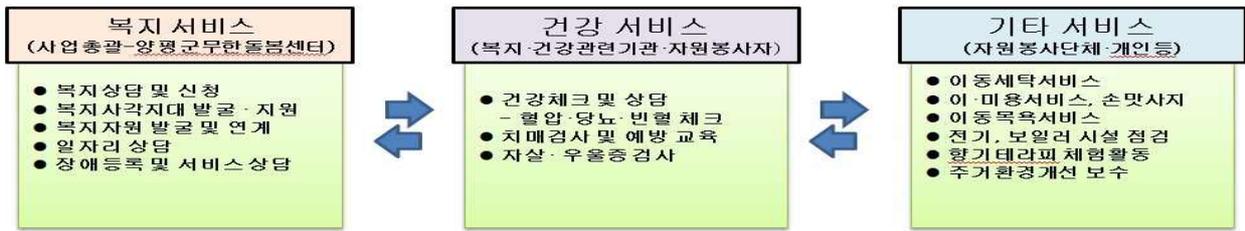
- 양평군은 경기도 내에서 최고 넓은(서울시의 1.45배)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73%가 산림 지역이어서 복지·보건서비스 접근성 한계  
⇒ 촘촘한 복지연계망으로 현장중심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함
-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 경기도 내 3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는 21.1%(초고령사회)로 복지와 건강에 대한 욕구 상승  
⇒ 271개 마을 중 산간 오지지역 70개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복지·보건서비스제공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치매검사 및 예방, 노인자살예방 상담 등 노년의 삶의 질 향상

|     |                              |                                  |                           |
|-----|------------------------------|----------------------------------|---------------------------|
| 현황  | 면적 경기도 최고<br>73% 산림지역        | 노인인구 비율 21.1%,<br>100세 건강시대 욕구증가 | 복지예산 및 사업 급증,<br>복지체감도 정체 |
| 문제점 | 복지·보건서비스 접근성 및<br>사각지대발굴의 한계 | 복지·건강서비스<br>수요 증가                | 예산의 한계,<br>민·관협력체계 구축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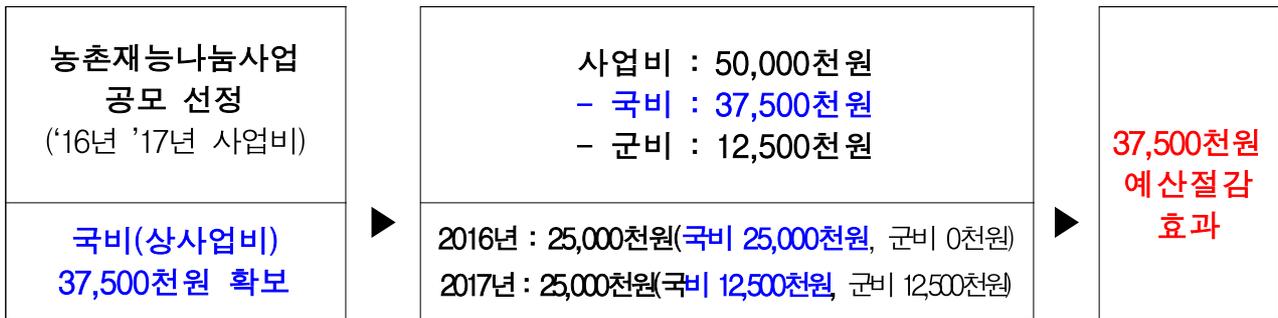
## □ 개선내용

- 장 소 : 산촌·오지마을 마을회관(경로당) 거점으로 운영
- 사업대상 : 독거노인 및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 연계기관 : 양평군자원봉사센터 외 12개소
- 운영방법 : 이동빨래방 차량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동아리,개인 봉사자와 재능나눔 연계 ⇒ 직접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및 운영체계



○ 사업예산 투입내역



□ 개선효과

- 투입인력 : 기관·단체·개인 재능기부자 243명(연인원)
- 서비스 제공실적 : 69회/서비스이용자 3,705명 (’16. 9월말 기준)

| 구분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횟수 | 69 | 2  | 13 | 9  | 8  | 7  | 8  | 8  | 8  | 6  |

- 경로당 one-stop 복지·보건서비스로 농촌형(고령화 노인) 욕구맞춤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손마사지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다문화가족)의 재능나눔 참여를 통한 삶의 의욕고취 및 행복공동체 구현
  - **달행이 사업추진 예산절감**
    - 삼성전자 사업 제안 신청 : 이동 세탁차량 확보(150,000천원 상당, '14.12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선정('15. 4. 23)
      - 상사업비 10,000천원 ⇨ **당초 예산 군비 10,462천원 절감**
- ⇒ '16년, '17년도 총사업비 50,000천원 소요 중 ⇨ **37,500천원 예산 절감**



마사지 봉사 활동



이불빨래 세탁 및 건조 서비스



주거불편사항 개선(노후전기시설 개선)



이동목욕서비스



문화체험, 복지상담, 건강체크,  
기관홍보 등

기관명 : 양평군 행복돌봄과

담당자 : 임용진(031-770-2142)

## &lt; 성과요약 &gt;

-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 주민의 나눔참여를 바탕으로 모금된 성금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재정 세출예산 111,120천원 절감 효과 발생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양평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에 의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공장 설립이나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 인구가 유입 조건이 형성되지 못해 지역발전환경이 경기도 내 타 시군보다 열악한 상황
- 또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농업이나 서비스업종에 국한되어 세수가 한정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0.54%인 열악한 수준으로 다양한 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 그러나, 낮은 지방재정 수준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는 발생하고 그 수요를 해소하는데 지방재정이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 개선내용

- 열악한 지방재정의 상황에서도, 양평군에는 주민 스스로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민(民) 주도의 나눔실천이 활발하고,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월등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참여로 조성된 성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모색하게 됨.
- 이러한 주민들의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천을 집목하고, 나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해피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 연합모금 및 기획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게 됨.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모금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모금절차와 배분 및 집행, 그리고 정산에 있어 투명성을 기할 뿐 아니라 조성된 기금관리에 대하여 업무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담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복지업무 부담을 해소함.
- 이에 양평군민 중 나눔문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부자에게 월 5천원 이상 정기기탁 계좌를 개설하고, 약 350여명의 정기 기부자를 확보하여 2016년 9월 현재 약 390,000천원의 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매년 물품, 성금, 기획사업 등으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됨.
- 금년도에는 이런 주민참여의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총 11가지, 총 사업예산 111,120천원의 맞춤형 지역복지사업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기존 법과 제도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
- 11개의 해피나눔 1인 1계좌 기획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보건소에 실시되는 의치(틀니)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사실상 치아에 문제가 있는 청장년 저소득층은 지원이 불가능했음. 그러나 이런 성금을 통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에서는 나이는 젊으나 생활여건이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게 됨.

○ 2016년 해피나눔 1인 1계좌 성금 기획사업 추진사항

| 연번 | 사업명           | 예산액(천원) | 사업내용            | 비고 |
|----|---------------|---------|-----------------|----|
| 계  | 11개사업         | 111,120 |                 |    |
| 1  | 해피학습지원        | 2,508   | 지역아동센터 학습기자재 지원 |    |
| 2  | 해피드라마테라피      | 4,990   | 정서완화 연극치료 프로그램  |    |
| 3  | 해피의치지원        | 9,000   | 65세미만 저소득층 의치지원 |    |
| 4  | 해피밀반찬         | 9,865   | 독거어르신 등 밀반찬 지원  |    |
| 5  | 해피알콜릭 치유캠프    | 4,912   | 알콜의존가구 치유프로그램   |    |
| 6  | 행복돌봄 더하고 나누기  | 1,000   | 행복돌봄추진단 집수리 지원  |    |
| 7  | 사랑의 간장 지원     | 605     | 설명절 대비 식료품 지원   |    |
| 8  | 해피카운셀링        | 4,220   | 위기가구 전문상담       |    |
| 9  | 사랑의 감자지원      | 3,000   | 저소득 가구 부식 지원    |    |
| 10 | 행복가득 송편지원     | 3,000   | 한가위 명절 송편 지원    |    |
| 11 | 사랑의 연탄·난방유 지원 | 68,020  | 저소득가정 연탄·난방유 지원 |    |

□ 개선효과

- 별도 지방재정예산 투입없이 주민의 나눔 참여만으로 지역 내 복지사업 추진이 가능
-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해소
- **2016년 복지재정 세출예산 111백만원 절감 효과**

참고

사업지원현황



해피의치 지원



해피밑반찬 지원



해피알콜릭 치유캠프



행복가득 송편지원



사랑의 감자 지원



사랑의 연탄·난방유 지원

기관명 :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 : 조철호(031-860-2057)

## &lt; 성과요약 &gt;

- 주민참여포인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를 외부용역 대신 자체 개발로 전환해 개발비 2천만원, 유지보수비 연4백만원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주민참여포인트제는?
  - 행사, 공청회, 환경정화 등 시정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
- 실태 및 문제점
  - 최초 개발비 2천만원, 유지보수에 연 4백만원 이내로 소요되나, 연간 포인트 지급 비용은(상품권 구입비) 5백만원대로 개발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함

## □ 개선내용

- 주민참여포인트 프로그램 자체개발, 관리
  - '참여활동 포인트 적립승인 ⇨ 관리 ⇨ 포인트 상품권 전환 지급'의 필수기능만 적용해 프로그램 자체개발
  -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소요예산 전액 절감

## □ 개선효과

- 예산절감 및 타 시군 무료배포를 통해 행정효율 향상
  -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개발 프로그램 무료배포 중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격려금 2,000천원(기여자 황수연 외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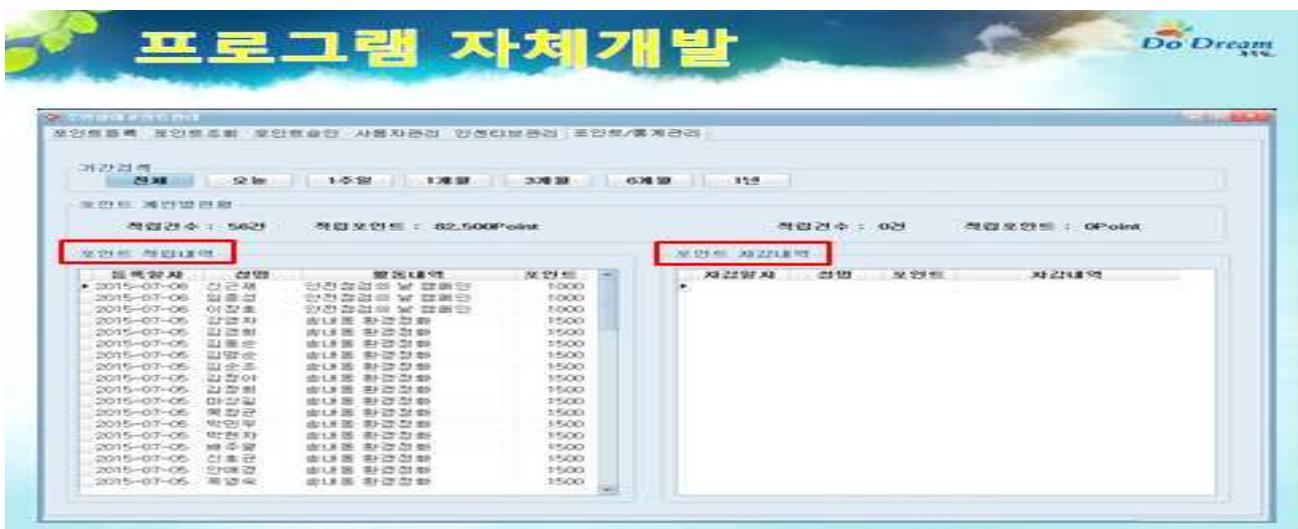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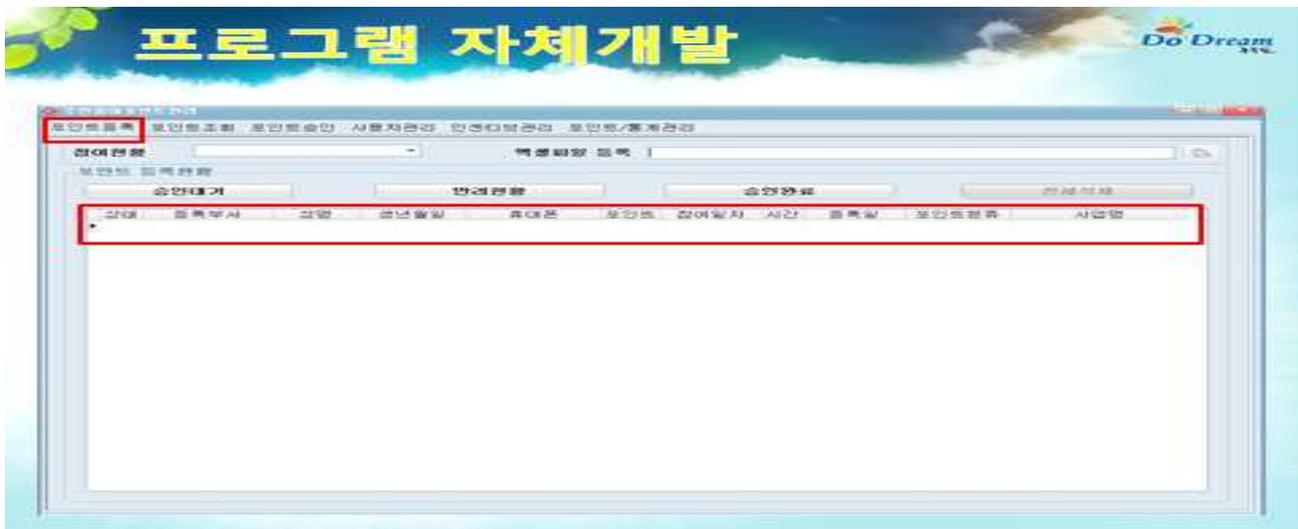
## 참고

##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현황

### □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현황

| 구 분         |           | 동두천시     | □□구        | △△시        | ○○구        |
|-------------|-----------|----------|------------|------------|------------|
| 인 구         |           | 10만      | 19만        | 30만        | 40만        |
| 시행일         |           | 15. 7. 1 | 11. 12. 21 | 12. 06. 15 | 13. 02. 13 |
| 사<br>업<br>비 | 시스템개발(1회) | 2,00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1,300만원    |
|             | 유지보수(연간)  | 320만원    | 262만원      | 340만원      | 400만원      |
|             | 포인트지급(연간) | 500만원    | 78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프로그램 개발화면



기관명 : 경기연구원

담당자 : 박정환(031-250-3220)

## &lt; 성과요약 &gt;

-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예산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전직원 참여·공유
- 이에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17년 예산 약 11억 절감 편성(△5.8%)  
※ 16년 18,585백만원 → 17년안 (1차) 17,918백만원 → (2차) 17,508백만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악화된 재정환경에도 직원공감대 형성부족
  - 한정된 예산재원에도 불구하고, 소관 예산 고수경향이 있어 예산운용 효율성 저하
- 이는 기존 예산관련 의사결정 시 경영진과 일부 예산관계 직원만 참여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기인한다고 경영진은 판단

## □ 개선내용

- 연구원의 재정환경을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2회 개최
  - 제1차 토론회(2016. 5. 16) : '17년 예산 편성내용('16년 18,585백만원 → 17년 17,918백만원 △6.7억)을 설명하고, 참석자 모두가 예산안 토론참여
  - 제2차 토론회(2016. 5. 26) : 제1차 토론회 결과 '17년 예산 수정안 논의 (17,508백만원 △10.8억)
- 이전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검토, 토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타 목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
  - 각종 회의, 행사경비는 실소요 경비반영, 개최횟수 축소를 통한 절감
  - 노후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유지비, 소모품 구입비, 유형자산 취득비 절감 등
  - 절감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 해외통신원 운영, 신규 연구분야 학술DB경비 편성

## □ 개선효과

- 연구원 재정환경에 대한 직원 공감대형성 및 긍정적인 조직문화 유도
- 이에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전년대비 약 11억 절감 편성(△5.8%)

□ 2017년 예산편성 토론회(2016.5.16.)



□ 2017년 예산(안)

(단위:백만원)

| 구 분     | '17년(안) | '16년   | 증감     | 비고 |
|---------|---------|--------|--------|----|
| 합 계     | 17,508  | 18,585 | △1,077 |    |
| 연구 사업 비 | 6,330   | 7,474  | △1,144 |    |
| 인 건 비   | 8,799   | 8,743  | 56     |    |
| 경 상 경 비 | 2,225   | 2,254  | △29    |    |
| 예 비 비   | 154     | 114    | 40     |    |

기관명 : 화성도시공사

담당자 : 김정태(031-8012-7722)

## &lt; 성과요약 &gt;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된 토공량을 적용하고, 잔여 발파암 매각을 통하여 사업예산 약 31억원을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불일치로 인한 토공량 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 □ 개선내용

-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암을 현장에서 유용하고 암판정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발생된 사토량에 대하여 발파암을 공개 매각,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킴
- 차수별 발파암 매각 현황

| 구 분   | 매각량(천 m <sup>3</sup> ) | 매각 비용 | 비고 |
|-------|------------------------|-------|----|
| 1차 매각 | 343                    | 31억원  |    |
| 2차 매각 | 360                    |       |    |
| 3차 매각 | 100                    |       |    |

## □ 개선효과

- 발파암 매각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사업성 향상  
- 암매각 비용 **31억원 절감**으로 조성원가 인하 효과(**약1만원/평**)

|     |                            |
|-----|----------------------------|
| 발행처 | 경기도 예산담당관<br>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 발행일 | 2016. 12                   |
| 연락처 | 031-8008-2123              |



